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 소득세

총괄 | 정문종 조세분석심의관

기획·조정 | 김경신 세제분석과장

집필 | 김효경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하영 행정실무원
이은지 자료분석지원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assembly.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7. 5.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서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통일문제 등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건실한 재정운용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부터 조세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의 제도일반, 행정·정책, 통계 그리고 조세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지방주민의 공공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및 지방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논의를 고려하여 해외의 지방세목 사례와 과세체계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국제 주요세목 편에서는 2017년도 개정 세법령을 반영하여 주요 지표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경조정세 논의, EU의 부가가치세 실행계획 보고서, OECD 회원국의 BEPS 시행논의 등 해외 동향과 제도변화 추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개선 사항, 법인세 실효세율 개념 및 현황 등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이슈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세제관련 입법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조세정책연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Contents

I. 개요

1. 소득세의 의의	3
2. 소득세의 연혁	4
가. 외국의 도입 시기	4
나. 우리나라 분류과세체제로의 도입(1949년)	4
다. 종합소득세제로의 전환(1961~1994년)	5
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1994~2008년)	8
마. 근로장려세제(ETC) 도입과 감세정책(2008~2012년)	9
바. 적정 세원확보 및 자녀 양육 지원(2012~2017년)	10
3. 소득세의 특성	13
가. 열거주의방식	13
나. 종합소득세	14
다. 개인단위 과세	15
라. 원천과세와 신고납부제도	16

II.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의 과세체계	19
2. 납세의무자	20

3. 과세소득	22
가. 이자소득	23
나. 배당소득	24
다. 사업소득	25
라. 근로소득	27
마. 연금소득	30
바. 기타소득	31
4. 종합소득공제	32
가. 인적공제	35
나. 특별공제	36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38
5. 과표구간과 세율	40
가. 종합과세대상 소득	40
나. 분리과세대상 소득	51
6. 세액공제 · 세액감면제도	55
가. 세액공제	55
나. 세액감면	61
7.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62
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62
나.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65
8. 신고납부 등 세무행정	67
가. 과세표준확정신고	67
나. 확정신고자진납부	69
다. 신고방식	69
라. 결정 또는 경정	70
마. 가산세	72
9. 분류과세: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75
가. 양도소득세	75
나. 퇴직소득세	88

Ⅲ.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소득세 현황	93
가. 소득세수 추이	93
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	95
2. 외국의 소득세 개편동향	100
가. 개관	100
나. 주요 국가들의 개편동향	103
3. 국내의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108
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108
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현황과 해외사례	111
다.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117
라. 금융소득 과세 강화	121
마.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127

표 목차

[표 1] 세계 각국의 소득세 도입 시기	4
[표 2] 1967~1972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6
[표 3] 1975~1994년 주요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7
[표 4] 1996~2008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9
[표 5] 2008~2011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0
[표 6] 2012~2017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1
[표 7] 1995~2015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추이	20
[표 8] 비과세 이자소득	23
[표 9] 비과세 배당소득	25
[표 10] 비과세 사업소득	26
[표 11] 근로소득공제 제도	28
[표 1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28
[표 13] 연금소득공제 제도	30
[표 14]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2012년)	34
[표 15]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36
[표 16] 특별공제 제도의 변화	37
[표 17]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내용	38
[표 18]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2017년)	40
[표 19] 종합소득세 부담구조(2015년)	41
[표 20] 근로소득세 부담구조(2015년)	41
[표 21] 중앙정부기준 과세 표준 구간 개수	43
[표 22]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45
[표 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	47
[표 24] 평균유효세율 추이(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 기준)	49
[표 25] 가구유형별 2016년 평균유효세율	50
[표 26] 분리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51
[표 27]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추이	54
[표 28] 주요 세액공제제도	55
[표 29]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57
[표 30] 인적공제 항목의 개편	58
[표 31]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의 개편	58
[표 32] 특별공제 항목의 개편	59
[표 33] 특별세액공제 요건	60

[표 34]	주요 세액감면제도	61
[표 35]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개정 연혁	62
[표 36]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65
[표 37]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71
[표 38]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	72
[표 39]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77
[표 40]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개정 내역	79
[표 41]	장기보유특별공제 연혁	82
[표 42]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연혁	84
[표 43]	양도소득세 주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황(2016년 기준)	86
[표 44]	장기근속공제	88
[표 45]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89
[표 46]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98
[표 47]	OECD국가의 총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99
[표 48]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109
[표 49]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개정 연혁	111
[표 5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112
[표 51]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112
[표 52]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중복가구(2015년 귀속기준)	113
[표 5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5년 귀속 기준)	113
[표 54]	소득종류와 총급여 규모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5년 귀속 기준)	114
[표 5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분포(2015년 귀속)	117
[표 5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분포(2015년 귀속)	118
[표 57]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현황(2015년 소득 기준)	119
[표 58]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121
[표 59]	주식양도차익의 대주주 과세요건 변화(지분율, 시기총액)	124
[표 60]	주요국의 상장주식 관련 소액주주 과세현황	125

그림 목차

[그림 1] 소득세수와 소득세 납세인원 추이	3
[그림 2]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15
[그림 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조세납기	16
[그림 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정	19
[그림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과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 추이	21
[그림 6] 소득금액 계산구조	22
[그림 7] 종합소득공제	33
[그림 8] 근로장려세제 급여구조(2017년~)	64
[그림 9] 자녀장려금 지급 구조(2017년~)	66
[그림 10]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중복 수급: 자녀 2명인 경우	66
[그림 11]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80
[그림 12] 소득세 징수액 추이(1990년 이후)	93
[그림 13] 소득종류별 소득세 징수액 추이(2004년 이후)	94
[그림 14] 우리나라와 OECD(평균) GDP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1972~2014년)	96
[그림 15] 2010년 대비 2014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변화	97
[그림 16] OECD국가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1981년과 2015년 비교	100
[그림 17] OECD국가의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 1981년과 2015년 비교	101
[그림 18] 2000년 대비 2015년 가구유형별 OECD 평균 실효세율 비교	102
[그림 19]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 변화(2013~2015년)	109
[그림 20] 미국의 가구당 EITC 지급 구조 (2017년 기준)	115
[그림 21] 미국의 가구당 CTC(1자녀 가구) 지급 구조(2017년 기준)	115
[그림 22] 영국의 가구당 WTC와 CTC 지급 구조(2016년 기준)	116
[그림 23]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결과	128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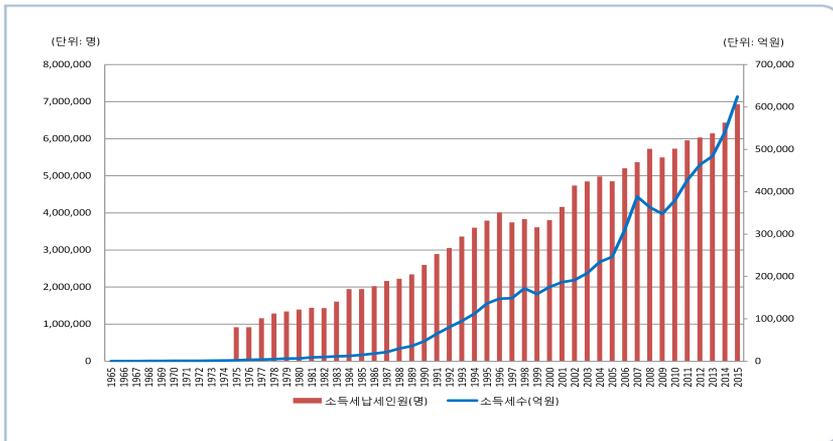
1. 소득세의 의의	3
2. 소득세의 연혁	4
3. 소득세의 특성	13

I. 개요

1. 소득세의 의의

-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하나, 여기서는 개인소득세로 대상을 한정
 -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와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로 구분
 -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어¹⁾, 이하에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지칭
-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목으로, 세수기여도가 높은 편
 - 2015년 소득세 징수액은 62.4조원으로 내국세 징수액(185.2조원)의 33.7%
 - 2015년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인원은 6,930,509명으로 전체 납세인원(15,565,272명)의 44.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소득세수와 소득세 납세인원 추이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총괄개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2. 소득세의 연혁

가. 외국의 도입 시기

- 소득세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며, 소득세가 세계 각국에서 명실공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이후임
 - 임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도입되었는데, 일본은 1940년, 미국은 1943년, 영국은 1944년에 동 제도가 도입

[표 1] 세계 각국의 소득세 도입 시기

국가	도입배경 및 도입시기
영국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에 핏트(W. Pitt)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필(Peel)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
미국	남북전쟁(1862~1871년) 때 일시적으로 도입되었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
프랑스	1914년 도입
독일	1891년 프로이센에서 주세로 도입하였고, 1920년에 연방세로 채택

자료: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0.

나. 우리나라 분류과세체계의 도입(1949년)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시대와 미군정 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 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소득세법(법률 제33호)을 제정
 - 그 동안 소득세에 포함된 법인소득세를 분리하여 법인세로 독립
 - 소득세를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배당소득 등)와 특별소득세(청산소득분배금, 퇴직급여소득, 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일시소득, 공채 및 사채이자소득, 은행예금이자소득 등)로 구분
 -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

- 특별소득세는 소득원천별로 초과누진세율 또는 차등비례세율에 의하여 분류과세
- 종전에 과세소득의 범위 안에 포함되었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종합소득세제로의 전환(1961~1994년)

-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1949년 법 제정 이후 1961년과 1967년의 법 제정 등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1974년에 완성**
 - 1961년 5·16혁명 이후에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소득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세법(법률 제821호)을 제정
 - 완전한 분류과세(부동산 · 배당이자 · 근로 · 사업 · 기타소득의 5개 유형으로 분류과세)
 - 부동산 · 근로 · 사업소득의 경우 3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배당이자 ·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
 - 경제개발 재원조달과 세제유인기능 강화를 위해 1967년에 종전의 소득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세법(법률 제1966호)을 제정
 - 분류과세와 종합과세의 이원화(재원 확보를 위하여 분류과세 소득 중 각 소득별 일정액 이상으로서 두 종류 이상의 분류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함)
 - 1967년부터 1970년까지 4번에 걸친 세제개편에 의해 점진적으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인상
 - 1967년에 5단계였던 과세표준 구간을 1968년에 7단계로, 1969년에는 8단계, 그리고 1970년에 9단계로 점진적으로 세분화
 - 1967년에 40%의 최고세율을 1972년에 48%까지 인상



[표 2] 1967~1972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1972년	
5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9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4만원 이하	7	18만원 이하	7	18만원 이하	7	12만원 이하	7	12만원 이하	7
48만원 이하	15	24만원 이하	9	24만원 이하	9	24만원 이하	9	24만원 이하	9
72만원 이하	25	36만원 이하	16	36만원 이하	12	36만원 이하	11	36만원 이하	12
96만원 이하	35	48만원 이하	18	48만원 이하	15	72만원 이하	14	72만원 이하	15
96만원 초과	40	72만원 이하	30	60만원 이하	20	96만원 이하	20	96만원 이하	19
		96만원 이하	40	72만원 이하	27	120만원 이하	27	120만원 이하	21
		96만원 초과	50	96만원 이하	40	180만원 이하	34	180만원 이하	32
				96만원 초과	50	240만원 이하	42	240만원 이하	40
						240만원 초과	50	240만원 초과	48

자료: 임주영 외,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국회예산정책처 운영보고서, 2012.

- 1974년 12월에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여 현행 소득세 체계를 구축

 - 과세소득을 종합소득(부동산·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개인별로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의 경우 세대단위로 합산과세
 - 1968년 이래 시행되어 오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소득세제 안에 흡수·보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설함
- 1975년 이후 16단계의 과표구간은 1989년에 8단계, 1994년에 6단계로 조정되었고, 최고세율은 인하

 - 1975년 이후 1984년까지 과표구간과 세율을 5번에 걸쳐 조정하였으나, 대부분 16단계의 다단계 구조를 유지하면서 최고세율을 인하
 - 1979년 과세표준은 17단계로 한 단계 추가, 그리고 1984년 한 단계 감소하여 다시 16단계로 돌아옴

- 1975년 이후 세율은 계속 인하되어, 최저세율은 8%에서 5%로, 최고세율은 70%에서 55%로 대폭 인하
- 1989년에 종전의 16개 다단계 세율체계를 8단계로 급격하게 간소화하는 세제개편을 실시하였고,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각각 5%와 50%로 인하
- 1989년 이후에 과표구간의 단순화와 세율인하가 계속 이루어져 1994년에 과표구간은 6단계로 줄어들었고, 최고세율은 45%까지 인하

[표 3] 1975~1994년 주요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75년		1989년		1991년		1994년	
16단계		8단계		5단계		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24만원 이하	8	250만원 이하	5	400만원 이하	5	400만원 이하	5
48만원 이하	10	500만원 이하	10	1,000만원 이하	16	800만원 이하	9
72만원 이하	12	800만원 이하	15	2,500만원 이하	27	1,600만원 이하	18
96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이하	38	3,200만원 이하	27
120만원 이하	18	1,7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초과	50	6,400만원 이하	36
150만원 이하	21	2,300만원 이하	30			6,400만원 초과	45
18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이하	40				
240만원 이하	30	5,000만원 초과	50				
300만원 이하	35						
480만원 이하	40						
720만원 이하	45						
1,200만원 이하	50						
2,400만원 이하	55						
3,600만원 이하	60						
4,800만원 이하	65						
4,800만원 초과	70						

자료: 임주영 외,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2012.



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1994~2008년)

- 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1.1 시행)를 도입
 -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부부단위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함
 - 세후소득 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 도입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4,000만원)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함
 -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단위를 종래의 세대단위에서 부부단위로 개정
 - 종합소득세 등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종래의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 소득세의 확정방식을 종래의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 2002년 8월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해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도입
 -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 8. 29)으로 폐지되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부부합산기준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개정
 -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과세대상과 경제적 이익이 출현하더라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도입함

- 2002년과 2005년에 국내경기 활성화 및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을 각각 1%p인하하고 2008년에 한 번의 과표구간 상향조정이 있었음
 -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과표구간의 조정 없이 세율만 2차례에 걸쳐 인하하였고, 2008년에 과표구간을 부분적으로 상향조정

[표 4] 1996~2008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96년		2002년		2005년		2008년	
4단계		4단계		4단계		4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000만원 이하	10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40	8,000만원 초과	36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자료: 임주영 외,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국회예산정책처 운영보고서, 2012.

마.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감세정책(2008~2012년)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의욕 제고 및 소득지원을 통해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
 - 2006년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8146호)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등 집행을 위해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귀속 소득분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행
 - 2008년 제도 시행 직후 최초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실시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2008년 12월 26일 개정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함(자녀 2인 이상 부양 →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세대만 적용 → 소규모 주택 보유 세대도 적용, 연간 최대 지급액 80만원 → 120만원으로 상향)



-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근로소득자 외에 보험모집원과 방문판매원에게도 적용대상이 확대됨
- 2008년 이후 4단계 과표구간 기본체계가 유지되었고,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율이 추가적으로 인하됨
 -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2%p 인하됨

[표 5] 2008~2011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008년		2009년		2010년	
4단계		4단계		4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자료: 임주영 외,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2012.

바. 적정 세율확보 및 자녀 양육 지원(2012~2017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의 양호한 국세수입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이 사회경제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소득세 측면에서의 형평성 강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 2012년 및 2013년 세수부족 문제는 일부 경제전망 오차 요인, 내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부동산·주식시장 부진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에 기인
 - 2014년 이후 자산시장 호조, 소비증가, 법인실적 개선 등 경제지표 개선과 더불어 2013년 소득세법 개정, 2015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수실적이 개선되는 상황

-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5단계 세율구조를 형성 하였으며, 2014년 최고구간 확대 및 2017년 추가로 최고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6단계 세율구조 형성
 - 2012년 경기 위축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고소득구간(3억원 초과) 소득자의 한계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
 - 2014년에는 최고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
 - 2017년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

[표 6] 2012~2017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012년		2014년		2017년	
5단계		5단계		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기준을 2,000만원으로 개정
 -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
- 지속적인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확대 및 수급요건 완화
 -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근로소득자와 탈기초수급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였고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
 -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을 2016년부터 50대 이상, 2017년 이후에는 40대



이상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는 30대 이상도 포함되도록 조정

- 2014년 세법개정에서는 차상위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장려에 집중하고자,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부양자녀 수’에서 ‘가구유형별 소득수준’으로 변경
 - 2016년 세법개정으로 가구유형 별 최대지급액을 약 10% 인상함과 동시에 주택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대상을 확대
-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도입
 - 가구의 형태(단독, 맞벌이 등),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주어 2015년 1월부터 자녀 1인당 50만원 내외의 자녀장려금을 지급
 - 2016년 세법개정으로 주택요건을 삭제하였고, 2017년 개정 시 재산요건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대상을 확대

3. 소득세의 특성

가. 열거주의방식

-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포괄주의방식과 열거주의방식이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열거주의방식으로, 법인세는 포괄주의방식으로 과세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이 이 방식을 채용
 -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음
 -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서 한정 ·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소득의 성질이나 공익상의 필요 등에 따라 의도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거나 입법상의 미비 또는 공백으로 인해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공백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비과세되는 경우와는 별개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포괄주의방식은 포괄적인 정의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의 내국세법에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됨과 아울러 같은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될 소득의 예시적인 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 일본은 과세소득을 소득발생의 원천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면서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들은 모두 잡소득에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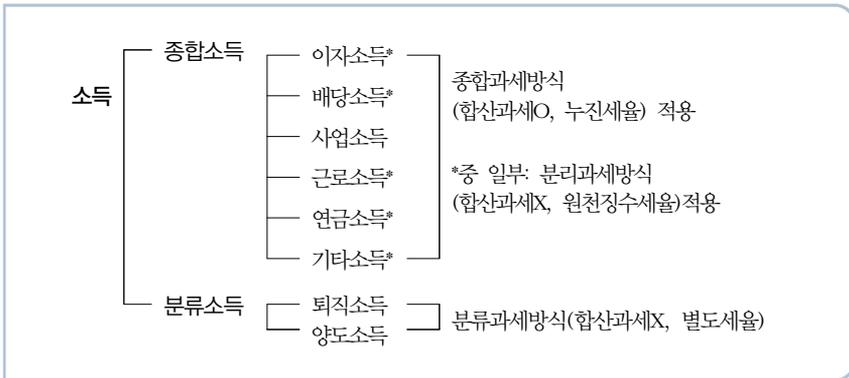


나. 종합소득세

-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와 분류소득세(classified income tax)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
- 종합과세는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방법
 - 과세최저한의 설정, 개인적 사정의 고려, 누진세율의 적용 등에 의하여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음
 - 반면 징세 및 납세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진신고의 탈루 등에 의한 탈세의 위험성이 높음
- 분류과세는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 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임
 - 이 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납세 및 징세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같은 금액의 소득을 가진 사람간에도 소득원천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를 한다는 점, 소득원천에서 주로 비례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행하는 점 및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을 구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을 통해 소득이 집적·형성된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위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구분 가능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

- (예 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해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하나,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됨(금융소득종합과세)
- (예 2)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분류소득은 퇴직·양도소득으로 각각 퇴직소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별도 과세체계 적용

[그림 2]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다. 개인단위 과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과세

-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와 소비단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²⁾로 구분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과세하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
-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는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부부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

2) 소비단위주의는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생활상의 집단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부부단위주의(marital unit system)와 가족단위주의(family unit system)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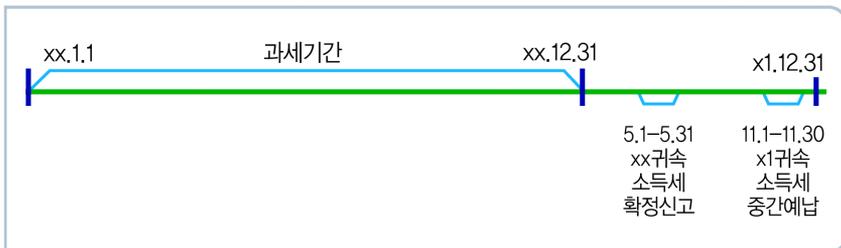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세를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소득세의 크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의 기본단위가 부부 내지 가족이기 때문에 개인단위보다 소비단위가 보다 공평의 원칙에 합치함
 - 역탄력성 원칙³⁾에 따르면 개인단위 과세는 가구단위 과세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 있으며, 가구단위 과세와 달리 결혼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음
 - 결혼한 여자의 노동공급이 그들의 남편의 노동공급보다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고려 하에서는 여자의 노동공급에 대해 상대적 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어야 하나, 가구단위 과세의 경우 부부는 동일한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임
 - 또한 가구단위 과세의 경우 소득세제가 결혼에 대하여 소위 결혼세로 작용함으로써 결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라. 원천과세와 신고납부제도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단계에서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고납부제도는 국가에서 개인의 세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하였던 기존 부과 납부제에 비해 보다 납세자 중심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림 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조세납기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3) 역탄력성 원칙은 재화들이 소비에 있어서 연관된 상품이 아닌 경우 탄력성에 반비례하여 세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효율적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낮은 세율이, 비탄력적인 상품에 높은 세율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Ⅱ.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의 과세체계	19
2. 납세의무자	20
3. 과세소득	22
4. 종합소득공제	32
5. 과표구간과 세율	40
6. 세액공제·세액감면제도	55
7.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62
8. 신고납부 등 세무행정	67
9. 분류과세: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75

Ⅱ.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의 과세체계

-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도출한 과세표준에 각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

[그림 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정

종합소득금액 ¹⁾	퇴직소득금액 ²⁾	양도소득금액 ³⁾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 (5년 단위 연분연승법 적용)	× 양도소득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감면
= 종합소득 결정세액	= 퇴직소득 결정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주: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임)

2) 퇴직소득금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3)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 납세의무자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데, 이를 개인이라고 부름
 -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음
- 종합소득세의 납세자인 자영업자는 2015년 약 619만명으로 1995년 351만명에 비해 76.4%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세의 납세자인 근로자는 2015년 1,733만명으로 1995년 1,047만명보다 65.6% 증가
 - 종합소득자 확정신고비율은 2015년 88.6%(548만명/619만명)로 매년 증가
 -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5년 과세표준 0 이상인 인원의 비율은 85.8%(1,488만명/1,733만명)로 2013년(68.7%)대비 크게 증가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과세표준이 확대됨에 따라, 세율(6~40%) 적용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

[표 7] 1995~2015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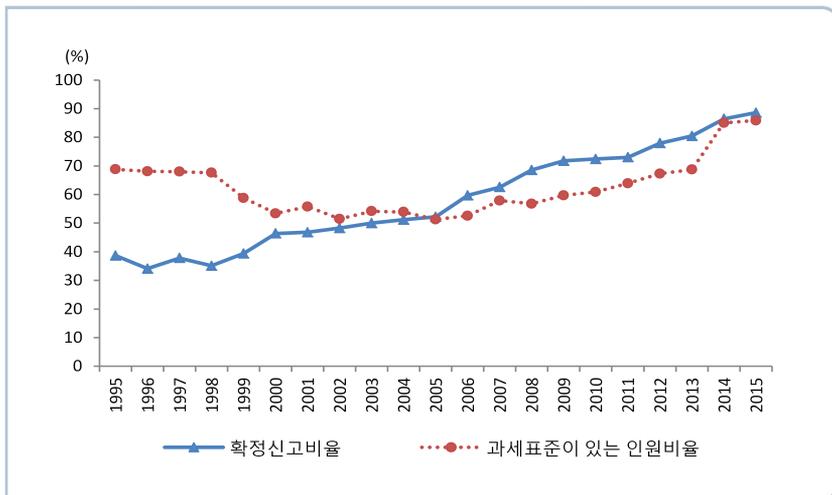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인원(A)	확정신고인원(B)	확정신고비율(B/A)	연말정산신고인원(C)	과세표준이 0 이상인 인원(D)	과세표준이 0 이상인 인원 비율(D/C)
1995	3,507	1,357	38.7	10,467	7,198	68.8
1996	3,657	1,247	34.1	10,212	6,958	68.1
1997	3,438	1,299	37.8	10,212	6,944	68.0
1998	3,495	1,226	35.1	9,276	6,269	67.6
1999	3,408	1,342	39.4	9,390	5,520	58.8
2000	3,480	1,616	46.4	11,102	5,934	53.4
2001	3,808	1,782	46.8	11,555	6,446	55.8
2002	4,161	2,010	48.3	12,017	6,187	51.5
2003	4,227	2,115	50.0	11,547	6,258	54.2
2004	4,363	2,236	51.2	11,624	6,268	53.9

연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A)	확정신고 인원(B)	확정신고 비율(B/A)	연말정산 신고인원(C)	과세표준이 0 이상인 인원(D)	과세표준이 0 이상인 인원 비율(D/C)
2005	4,370	2,279	52.2	11,903	6,107	51.3
2006	4,580	2,736	59.7	12,595	6,621	52.6
2007	4,913	3,074	62.6	13,376	7,749	57.9
2008	5,227	3,584	68.6	14,046	7,981	56.8
2009	4,971	3,571	71.8	14,295	8,541	59.7
2010	5,230	3,785	72.4	15,177	9,244	60.9
2011	5,419	3,957	73.0	15,540	9,935	63.9
2012	5,585	4,353	77.9	15,768	10,612	67.3
2013	5,674	4,565	80.5	16,360	11,239	68.7
2014	5,846	5,053	86.4	16,687	14,190	85.0
2015	6,187	5,483	88.6	17,333	14,879	85.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있는 인원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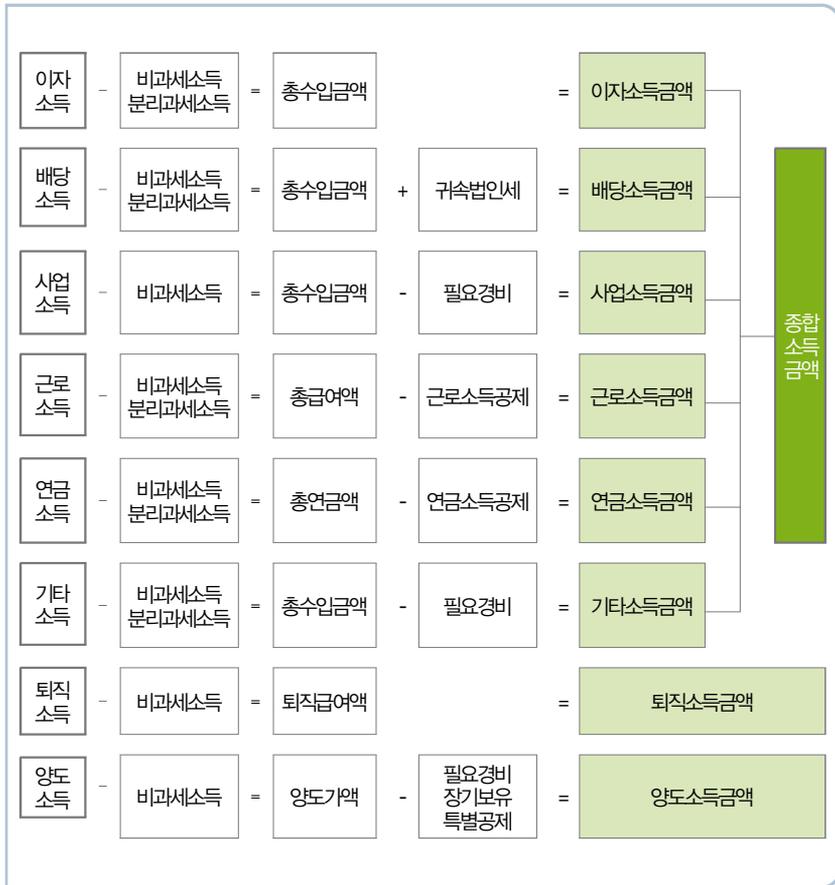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과세소득

-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
 - 8가지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도출한 후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분류과세 소득은 별도로 소득금액 계산

[그림 6] 소득금액 계산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에 차이가 발생
 - 거주자의 경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이 포함
 -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일시금(부가금, 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
 - 양도소득은 특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재 여부 등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당해 소득별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포함

가. 이자소득

-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
- 반면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표 8] 비과세 이자소득

근 거	비과세 이자소득	비 고
소득세법 §12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¹⁾	
소득세법 시행령 §25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한도 1억원(2017.3.31. 이전 계약분 2억원) • 월 적립식 납입 한도 150만원 (2017.4.1. 이후 가입분)



근 거	비과세 이자소득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87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20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 201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9의3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3천만원)의 이자소득 ²⁾	• 2007.1.1.~2018.12.31.까지 발생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4	재형저축(분기별 3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가입금(3천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 2016.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연 2천만원 한도)의 이자소득(200만원 이내) ³⁾	• 2018.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주: 1)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는데(信託法 65), 이러한 공익신탁의 이익에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비과세

2) 2019년 발생분은 5%, 2020년 이후 발생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

3) 이자소득 200만원 초과분은 9%로 저율과세(총급여 5천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비과세소득 기준은 250만원)

나. 배당소득

-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 등도 포함
 - 회사가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의 형태로 금전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익배당을 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에 배당으로 의제함

■ 반면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표 9] 비과세 배당소득

근거	비과세 이자소득	비고
소득세법 §12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87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 201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⑨	증권금융회사에 위탁한 우리사주(합계액 1,800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 §88의5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¹⁾	• 2018.12.31.까지 수령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2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1억원 한도)등에 대한 배당소득	• 2010.12.31.~2012.12.31.까지 수령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4	재형저축(분기별 300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가입금(3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 2016.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7	해외주식에 자산의 60% 이상 투자한 펀드에 투자해 얻는 매매·평가손익 및 환차손익	• 20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연 2천만원 한도)의 배당소득(200만원 이내) ²⁾	• 2018.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주: 1) 2019년 발생분은 5%, 2020년 이후 발생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

2) 이자소득 200만원 초과분은 9%로 저율과세(총급여 5천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비과세소득 기준은 250만원)

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함
 - 사업의 범위 또는 구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반면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12)

[표 10] 비과세 사업소득

구분	내용
논·밭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주택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 양도일에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농가부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고공품(蠶工品)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①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로 적용하며(예: 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전통주제조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를 농어촌지역(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세법」 제3조제1호의2에 따른 전통주 ②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 ③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산림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조림하지 않은 자연림과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 임목의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지 않음

라.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포함
 - 변형급여(fringe benefits)가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만, 평가상의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의 확충이라는 명목 하에 과세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율(6%)을 적용하고, 이와 같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세액을 완납적으로 원천징수
-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짐
 - 다만, 외국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그러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라 할지라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음
- 반면 다음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12)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2013년부터 포함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 (나)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 (다)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상응하여 근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도출
 - 근로소득공제율은 소득증가에 따라 축소
 - 2014년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축소 조정

[표 11] 근로소득공제 제도

총급여액	공제액
0 ~ 500만원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1982년부터 상한금액을 설정한 소득구간별 정률 소득공제로 전환한 후 2001년부터 공제상한이 없는 정률 근로소득공제로 전환
 - 1982년부터 연간 170만원 한도로 정률 소득공제(88만원 이하 100%, 88~300만원 20%, 300만원 초과금액의 10%를 공제)로 전환
 - 이후 상한금액과 소득구간(혹은 공제율)을 변동
 - 2001년부터 공제상한 없는 4단계 공제체계로 전환한 후 2013년 세법개정 시 1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2%를 적용하도록 5단계 공제체계로 개편

[표 1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연도	제도	공제한도
1991	총급여 23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30만원 초과 : 30%	490만원
1993	총급여 25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50만원 초과 : 30%	600만원
1994	총급여 27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270만원 초과 : 30%	620만원

연도	제도	공제한도
1995	총급여 31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310만원 초과 : 30%	690만원
1996	총급여 4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400만원 초과 : 30%	800만원
1997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초과 : 30%	900만원
199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1,200만원
2001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초과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2002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03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7.5%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04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전액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09	총급여 500만원 이하 : 80%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50% 총급여 1,500만원 ~ 3,000만원 : 15% 총급여 3,000만원 ~ 4,500만원 :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 5%	
2014	총급여 500만원 이하 : 70% 총급여 500만원 ~ 1,500만원 : 40% 총급여 1,500만원 ~ 4,500만원 : 15% 총급여 4,500만원 ~ 1억원 : 5% 총급여 1억원 초과 : 2%	



마.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소득으로 구성
 -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소득과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 사적연금소득은 「근로자퇴직보험보장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
- 연금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상응하여 연금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도출
 - 연금소득공제율은 소득증가에 따라 축소

[표 13] 연금소득공제 제도

총연금액	공제액
0~350만원	총연금액의 100%
350~700만원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1,400만원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 반면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12)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바. 기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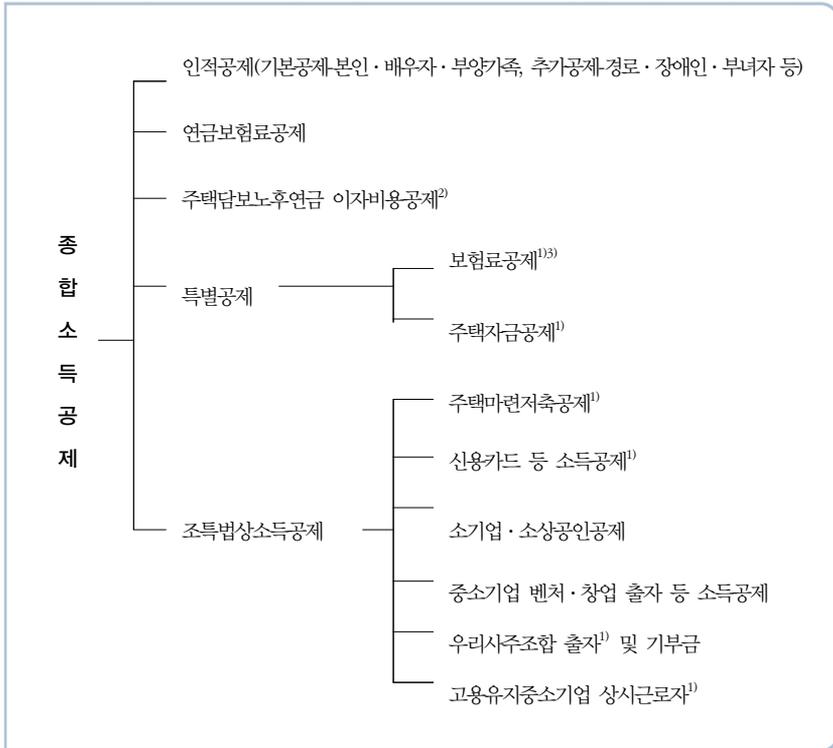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
 - 상금 · 현상금 · 포상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
 -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사례금, 전속계약금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
 -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
 - 종교인소득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함
 - 다만,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소득세법」 §12)은 비과세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 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국가보안법」 등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과 보로금
 - 서화 ·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 6세이하 자녀의 보육비(월 10만원 이내) · 사택사용 이익



4.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이 차등 적용
 - 종합소득에는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
-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구분
 -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
 - 인적공제제도는 초과누진세율구조와 함께 소득세제도의 근간을 이룸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구분
 -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200만원 범위 내)
 -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당해 지출로 말미암아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하는 지출항목에 대한 공제
 -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득공제 항목이 차등 적용
 -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소기업 ·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 창업 출자, 우리사주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그림 7] 종합소득공제



주: 1)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한 소득공제제도(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2008년부터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2) 연금소득자만 이용 가능

3) 보장성 보험료 공제는 세액공제로 이동(2014.1.1.분부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연도별 개정세법 반영



[표 14]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2012년)

	주요 소득세 공제제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특별공제: 항목별 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및 표준공제 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14.1.1분부터) • 기타 조특법상소득공제(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산출시 적용되는 소득공제(IRA기여금, 별거 · 이혼수당, 이사비용, 의료저축납입금, 자영업자의 기여금 및 의료보험 등) • 표준공제 혹은 항목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 공제(의료비, 지방정부 납부 세금, 주택대출금 이자비용, 상해 및 절도손실, 피고용인으로 지출하는 경비 등) • 인적공제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노인 · 장애인 세액공제 등)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대출금이자공제, 생계비 또는 별거 · 이혼수당, 기부금공제, 생명보험공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공제, 벤처캐피탈 신탁지분 중 기업투자지분 공제, 채권손실액공제 등) • 인적공제(기본공제, 노인추가공제 등) • 세액공제(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고용소득공제, 생명보험 납입액과 개인연금 납입액 공제, 의료비공제, 지진보험료공제, 기부금 공제 등) • 인적공제(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이혼 · 사별자 공제 등) • 세액공제(외국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등)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비용공제(Special expenses deduction)(연금보험료, 건강 · 책임 · 장애인 · 노인 · 실업보험공제, 비영리활동 증진기부금 공제, 이혼 · 별거자에 지불하는 생활비, 납세자 본인의 최초 직업교육비용, 교회세 등) • 비경상 비용공제(Extraordinary expensed deduction)(화재 · 도난 · 홍수 등 불가피한 사건으로 가정용품 또는 의복 등이 분실된 경우 재취득 비용, 병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등) • 인적공제(기본공제, 자녀공제, 자녀양육비용공제) • 세액공제(사업소득자 일정액공제, 자영업자 혹은 근로자의 가사도우미 세액공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인적공제, 사회보장분담금, 업무관련 비용, 이혼 · 별거자에 지불하는 생활비 등) • 세액공제(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일시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부양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획득소득세액공제 등)

자료: IBFD;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구성되며, 가구원 수 및 구성에 따라 적용
- 기본공제는 본인 및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
 - 기본공제의 공제대상 및 1인당 공제금액 증가 추세
 - 기본공제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액이 2009년에 100만원에서 현행의 150만원으로 증가
 - 2016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조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 부양가족은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상 6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
- 추가공제는 특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
 - 경로우대·장애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 추가공제 중에서 경로우대자 공제는 1996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 50만원에서 2002년 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2004년부터 연령을 구분하여 65세 이상 연 100만원, 70세 이상 연 150만원의 공제액을 적용하다가 2009년부터 70세 이상 노인만 연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줌
 - 장애인공제는 1996년 50만원에서 2002년 100만원을 거쳐 2005년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
 - 부녀자 공제: 부양가족 있는 여성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1인당 50만원 공제
 - 한부모가족 공제: 한부모 가족(부양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연 100만원)를 2013년부터 신설
- 출산·입양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각각 2008년과 2007년에 신설되었으나 2014년부터 '자녀세액공제'로 개편



[표 15]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단위: 만원)

		공제 수준										
		1996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4
기본 공제	본인공제	100	→	→	→	→	→	→	150	→	→	→
	배우자공제	100	→	→	→	→	→	→	150	→	→	→
	부양가족공제	100	→	→	→	→	→	→	150	→	→	→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50	100	100 (65세 이상) 150 (70세 이상)	→	→	→	→	100 (70세 이상)	→	→	→
	장애인공제	50	100	→	200	→	→	→	→	→	→	→
	부녀자공제	50	→	→	→	→	→	→	→	→	→	→
	6세 이하 공제	50	→	100	→	→	→	→	→	→	→	폐지 → 세액공제
	출산·입양 공제	-	-	-	-	-	-	신설 200	→	→	→	폐지 → 세액공제
	한부모가족 공제	-	-	-	-	-	-	-	-	-	신설 100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 (1인) 50 (2인)	→	→	→	→	폐지	-	-	-	-	-	
다자녀추가공제	-	-	-	-	-	신설 50+ (자녀수-2) ×50	→	→	100+ (자녀수-2) ×200	→	폐지 → 세액공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4년 개정세법 반영

나. 특별공제

- 특별공제는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기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임
 - 보험료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

-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편입(2014.1.1.~)
-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40%로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조특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위의 두 소득공제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500만원의 한도를 설정(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300~1,800만원으로 변경)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의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세액공제로 변경(2014.1.1.~)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및 표준공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개편됨에 따라 폐지(2014.1.1.~)

[표 16] 특별공제 제도의 변화

		1993	1996	1999	2000	2002	2003	2004	2009	2014
보 안 비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	→	→	→	→	→	→
	보장성보험료	50만원	→	70만원	100만원	→	→	→	→	폐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	-	100만원	→	→	→	→	→ 세액 공제
의 료 비	본인 · 노인 · 장애인	급여	→	3% 이상	3% 이상	→	3% 이상	3% 이상 전액	→	폐지
	부양가족	3% 이상 100만원	→	3% 이상 200만원	3% 이상 300만원	→	3% 이상 500만원	3% 이상 500만원	3% 이상 700만원	→ 세액 공제
교 육 비	본인	전액	→	→	→	→	→	→	→	폐지 → 세액 공제
	취학전아동	-	1인당 70만원	100	→	→	150	200	300	
	초중고	전액	→	150	→	→	200	200	300	
	대학	-	1인당 230만원	300	→	→	500	700	900	
	장애인특수교육	-	-	-	-	150	전액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4년 개정세법 반영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득공제 항목이 차등 적용됨
 - 주택마련저축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납입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및 연간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2016년 세법개정)
 - 계산방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15%공제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직불카드 및 현금 사용액은 30% 공제율)
 - 공제한도: 기본 연 300만원(또는 총급여의 20%)에, 대중교통비·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를 추가
 - * 2017년부터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2016년 세법개정)

[표 17]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내용

총급여액	~2016년	2017년	2018년
~7천만원		300만원	300만원
~1억2천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200만원	200만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벤처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2017.12.31.)한 금액에 대해 2년 이내에 10% 공제율 적용
 -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액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의 공제율 적용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초과)으로 한도 차등 설정(2016년 세법개정)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상시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 삭감액 50%만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2018.12.31.)

- 소득공제 등의 합계액에 대해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에서 제외
 - 종합한도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는 벤처를 제외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2015.12.31.)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5. 과표구간과 세율

가. 종합과세대상 소득

- 종합소득세는 세액의 산출과정에 따라 산출세액, 결정세액 및 총결정세액으로 구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와 면제 또는 감면세액)
 -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세는 총 6개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초과누진세율 적용
 - 1996년 이후 기존 6개에서 4개 과표구간으로 축소된 이후 2011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5개 구간으로 변경
 - 2014년 최고세율(38%) 적용 소득기준 하향 조정(3억원 → 1.5억원)
 - 2017년 최고구간을 신설(1.5억원 → 5억원)하고, 세율 인상(38% → 40%)

[표 18]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2017년)

과세표준	세율
0 ~ 1,2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4,600만원 ~ 8,800만원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 1.5억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5억원 ~ 5억원	3,76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38%
5억원~	1억7,060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0%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표구간별 세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음
 - 2015년 기준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은 14.5%로, 2013년 13.8%, 2014년 14.4% 대비 상승
 - 과표 1.5억원 초과구간의 급여총계는 전체 중 32.7%, 결정세액은 전체 중 63.0%

[표 19] 종합소득세 부담구조(2015년)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유효세율
	만명	%	조원(A)	%	조원(B)	%	%(B/A)
과표 0인 경우	46	8.4	0.9	0.6	-	-	-
0~1,200만원	303	55.3	23.4	14.5	0.3	1.1	1.1
1,200~4,600만원	135	24.6	40.0	24.7	2.4	10.0	5.9
4,600~8,800만원	36	6.5	25.9	16.0	2.9	12.4	11.3
8,800만원~1.5억원	15	2.8	18.7	11.5	3.2	13.5	17.0
1.5억원 초과	13	2.4	53.1	32.7	14.8	63.0	28.0
합 계	548	100	162.0	100	23.6	100	14.5

주: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배당소득가산액·결손소득을 더한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총계)은 5.0%로, 2013년 4.4%, 2014년 4.8% 대비 소폭 상승
 - 과표 1.5억원 초과구간의 급여총계는 전체 중 4.6%, 결정세액은 전체 중 24.0%

[표 20] 근로소득세 부담구조(2015년)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급여총계		결정세액		유효세율
	만명	%	조원(A)	%	조원(B)	%	%(B/A)
과표 0인 경우	245	14.2	10.1	1.8	-	-	-
0~1,200만원	756	43.6	128.0	22.6	0.2	0.8	0.2
1,200~4,600만원	580	33.5	261.0	46.1	7.2	25.4	2.8
4,600~8,800만원	121	7.0	108.4	19.1	9.2	32.6	8.5
8,800만원~1.5억원	24	1.4	32.9	5.8	4.8	17.2	14.7
1.5억원 초과	8	0.5	26.2	4.6	6.8	24.0	25.9
합 계	1,733	100.0	566.7	100	28.3	100	5.0

주: 1) 유효세율의 분모를 급여총계 대신 근로소득금액(2015년 기준 총 413조원)으로 할 경우, 2015년 유효세율은 6.8% 수준

2) 연말정산 신고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0 이상인 과세자는 923만명, 면세자는 810만명 수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 1981년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구간 수는 17개로 OECD 평균(11.8개)보다 컸음
 - 당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0개 이상의 과표구간을 가지고 있었음
 - 우리나라는 이탈리아(32개), 스페인(30개), 멕시코(27개), 벨기에(24개), 스웨덴(18개) 다음으로 미국과 동일한 과표구간을 보유하고 있었음
- 1990년 우리나라는 8개로 198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OECD 평균도 5.2개로 대폭 감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이었고, 호주, 스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1981년에 비해 과표구간 수가 감소
 - 1990년에 우리나라보다 과표구간 개수가 많은 국가로는 스페인(16개), 프랑스(13개), 스위스(11개), 그리스(9개) 등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평균 과표구간 수는 1990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고 이런 추세가 유지되다가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소폭 증가함
 - OECD 국가의 평균 과표구간 수는 2000년(4.9개) 이후 2009년(4.4개)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4.7개)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음
 - 2015년 일본, 2016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과표구간 수를 늘림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 4개로 축소된 이후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2년 최고구간 신설에 따라 5개로 상향조정
 - 2017년부터 최고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6개의 과표구간을 적용

[표 21] 중앙정부기준 과세 표준 구간 개수

(단위: 개)

	1981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4	8	5	5	5	5	5	5	5	5	5	5
오스트리아	11	5	5	4	4	4	4	4	4	4	4	7
벨기에	24	7	7	5	5	5	5	5	5	5	5	5
캐나다	13	3	3	4	4	4	4	4	4	4	4	5
칠레			6	7	7	7	7	7	7	7	8	8
체코			4	1	1	1	1	1	1	1	1	1
덴마크	3	3	3	3	2	2	2	2	2	2	2	2
에스토니아			1	1	1	1	1	1	1	1	1	1
핀란드	1	1	7	5	5	5	5	5	6	6	6	6
프랑스	13	13	7	5	5	5	5	6	6	5	5	5
독일	2	2	3	3	3	3	3	3	3	5	5	3
그리스	15	9	5	3	4	9	9	8	3	3	3	3
헝가리		5	3	2	2	2	1	1	1	1	1	1
아이슬랜드			2	1	1	3	3	3	3	3	3	3
아일랜드	5	3	2	2	2	2	2	2	2	2	2	2
이스라엘			5	6	6	6	6	6	7	7	7	7
이탈리아	32	7	5	5	5	5	5	5	5	5	5	5
일본	1	1	4	6	6	6	6	6	6	6	7	7
한국	17	8	4	4	4	4	4	5	5	5	5	5
룩셈부르크	1	1	10	17	17	17	18	18	19	19	19	19
멕시코	27	6	10	8	8	8	8	8	8	11	11	11
네덜란드	10	3	4	4	4	4	4	4	4	4	4	4
뉴질랜드	5	3	4	7	4	4	4	4	4	4	4	4
노르웨이	8	3	3	3	3	3	3	3	3	3	3	5
폴란드			3	3	2	2	2	2	2	2	3	2
포르투갈	12	5	5	7	7	8	8	8	5	5	5	5
슬로바키아			7	1	1	1	1	1	2	2	2	2
슬로베니아			6	3	3	3	3	3	4	4	4	4
스페인	30	16	6	4	4	4	6	7	7	7	5	5
스웨덴	18	4	3	3	3	3	3	3	3	3	3	3
스위스	8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터키			6	4	4	4	4	4	4	4	4	4
영국	6	2	3	2	2	3	3	3	3	3	3	3
미국	17	2	5	6	6	6	6	6	7	7	7	7
OECD평균	11.8	5.2	4.9	4.6	4.4	4.7	4.8	4.8	4.8	4.9	4.9	5.0

자료: OECD Tax Database.



- OECD 국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과표구간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소득세 최고명목세율도 점차적으로 감소
 - 1981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들의 평균 최고명목세율은 59.5%에서 35.3%로 인하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2%에서 35%로 27%p 인하
 - 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40 → 50%), 일본(37 → 40%), 포르투갈(40 → 45.9%) 등은 최고명목세율을 인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진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에 OECD 평균 최고세율이 소폭 상승
 - OECD 평균 명목 최고세율은 2009년 34.8%에서 2016년 36.2%까지 상승
 -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프랑스(41 → 45%(12년)), 이스라엘(45 → 48%(12년) → 50%(13년)), 미국(35 → 39.6%(13년)), 멕시코(30 → 35%(14년)), 일본(40 → 45%(15년)), 오스트리아(50 → 55%(16년)), 캐나다(29 → 33%(16년)) 등
 - 동 기간 최고세율 인상 및 인하가 모두 이루어진 국가로 영국(40 → 50%(10년) → 45%(13년)), 그리스(40 → 45%(10년) → 42%(13년) → 45%(16년)), 스페인(23.5 → 30.5%(12년) → 22.5%(15년)) 등
-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기준 38%로 OECD 평균(36.2%) 보다 약간 높은 수준
 - 2017년부터 최고세율 구간(40%)을 추가로 신설해 6개의 과표구간을 적용
 - 2016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높은 최고세율을 가진 국가는 독일(45%), 프랑스(45%)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보다 낮은 최고세율을 가진 국가는 멕시코(35%),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소득세율을 가진 덴마크(24.1%), 노르웨이(24.3%), 스웨덴(25%) 등

[표 22]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단위: %)

	1981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60,0	47,0	47,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오스트리아	62,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5,0
벨기에	67,5	55,0	5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캐나다	43,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29,0	33,0
칠레	n,a	n,a	45,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체코	n,a	n,a	32,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덴마크	40,0	40,0	28,0	26,5	26,0	18,7	18,6	19,7	20,8	21,8	23,1	24,1
에스토니아	n,a	n,a	26,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0,0	20,0
핀란드	51,0	43,0	37,5	31,5	30,5	30,0	30,0	29,8	31,8	31,8	31,8	31,8
프랑스	60,0	56,8	53,3	40,0	40,0	40,0	41,0	45,0	45,0	45,0	45,0	45,0
독일	56,0	53,0	51,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그리스	60,0	50,0	45,0	40,0	40,0	45,0	45,0	45,0	42,0	42,0	42,0	45,0
헝가리	n,a	50,0	40,0	36,0	36,0	32,0	16,0	16,0	16,0	16,0	16,0	15,0
아이슬랜드	n,a	n,a	33,4	22,8	24,1	33,0	31,8	31,8	31,8	31,8	31,8	31,8
아일랜드	60,0	53,0	44,0	41,0	41,0	41,0	41,0	41,0	41,0	41,0	40,0	40,0
이스라엘	n,a	n,a	50,0	47,0	46,0	45,0	45,0	48,0	50,0	50,0	50,0	50,0
이탈리아	72,0	50,0	45,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43,0
일본	75,0	50,0	37,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5,0	45,0
한국	62,0	50,0	40,0	35,0	35,0	35,0	35,0	38,0	38,0	38,0	38,0	38,0
룩셈부르크	57,0	56,0	46,0	38,0	38,0	38,0	39,0	39,0	40,0	40,0	40,0	40,0
멕시코	55,0	35,0	40,0	28,0	28,0	30,0	30,0	30,0	30,0	35,0	35,0	35,0
네덜란드	72,0	60,0	60,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52,0
뉴질랜드	60,0	33,0	39,0	39,0	38,0	35,5	33,0	33,0	33,0	33,0	33,0	33,0
노르웨이	38,0	17,0	29,9	25,3	24,6	24,6	26,1	25,8	25,8	25,0	25,2	24,3
폴란드	n,a	n,a	40,0	40,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포르투갈	84,4	40,0	40,0	42,0	42,0	45,9	46,5	46,5	48,0	48,0	48,0	48,0
슬로바키아	n,a	n,a	42,0	19,0	19,0	19,0	19,0	19,0	25,0	25,0	25,0	25,0
슬로베니아	n,a	n,a	50,0	41,0	41,0	41,0	41,0	41,0	50,0	50,0	50,0	50,0
스페인	65,1	56,0	39,6	27,1	27,1	27,1	23,5	30,5	30,5	30,5	22,5	22,5
스웨덴	87,0	3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스위스	11,5	11,5	11,5	11,5	11,5	13,2	13,2	13,2	13,2	13,2	13,2	13,2
터키	n,a	n,a	40,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영국	60,0	40,0	40,0	40,0	40,0	50,0	50,0	50,0	45,0	45,0	45,0	45,0
미국	70,0	28,0	39,6	35,0	35,0	35,0	35,0	35,0	39,6	39,6	39,6	39,6
OECD평균	59,5	43,5	40,3	35,2	34,8	35,3	34,8	35,3	35,9	36,0	35,9	36,2

주: 별도 부가세는 제외

자료: OECD Tax Database.



-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균소득 대비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 지표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4.0배 수준으로 OECD 평균(5.5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최고구간을 신설하기 전인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3배 정도로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하였고, 2016년 기준 미국(8.0배), 독일(5.5배), 영국(4.1배) 등이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및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진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다시 증가**
 - OECD 평균은 2002년 4.4배에서 2006년 2.7배로 감소하다가 점차 상승하여 2015년에는 5.9배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3.5배에서 2010년 3.0배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3억원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면서 8.9배로 대폭 상승하였고, 2014년 1.5억원의 최고구간을 신설함에 따라 4.3배로 감소

[표 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

(단위: 평균소득의 배수)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1.3	1.2	1.3	1.7	2.6	2.5	2.8	2.7	2.6	2.4	2.3	2.3	2.2	2.2
오스트리아	2.2	2.1	2.0	2.0	1.9	1.9	2.1	2.1	2.0	2.0	14.2	13.9	13.7	24.7
벨기에	1.6	1.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	1.0	1.0
캐나다	2.8	3.0	2.9	2.9	2.9	2.9	3.0	2.9	2.8	10.7	10.6	4.4	4.3	4.3
칠레	18.2	17.5	17.2	16.9	16.7	16.8	15.5	12.9	12.8	12.3	11.8	11.8	11.3	10.9
체코	2.3	2.0	1.9	1.6	1.5	0.5	0.4	0.4	0.4	0.4	0.4	0.4	0.4	0.4
덴마크	1.0	1.1	1.1	1.1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에스토니아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0.1	0.4
핀란드	2.0	1.9	1.9	1.9	1.8	1.8	1.8	1.8	1.8	1.8	2.5	2.5	2.2	1.8
프랑스	2.8	2.8	2.7	2.9	2.8	2.8	2.8	2.8	15.8	15.4	15.2	15.0	14.8	14.8
독일	1.6	1.4	1.4	1.4	6.3	6.2	6.3	6.2	6.0	5.8	5.8	5.7	5.5	5.5
그리스	1.6	1.3	1.3	1.2	3.7	3.7	3.6	4.9	5.1	5.4	5.5	5.5	25.2	3.9
헝가리	0.8	0.9	0.8	0.8	0.8	0.7	0.8	1.6	0.8	0.9	0.0	0.0	0.0	0.0
아이슬란드	1.3	1.2	1.0	0.2	0.2	0.2	1.7	1.5	1.5	1.4	1.4	1.4	1.4	1.2
아일랜드	1.1	1.0	1.0	1.1	3.2	3.1	7.9	5.4	1.0	1.0	1.0	1.0	1.0	2.0
이스라엘	3.4	4.0	4.0	4.0	3.7	3.6	3.8	3.9	3.9	3.9	6.3	6.0	5.9	5.6
이탈리아	3.4	3.3	4.4	4.3	3.2	3.1	3.0	3.0	10.4	10.2	10.0	9.9	9.8	9.8
일본	4.5	4.5	4.5	4.5	4.5	4.5	4.7	4.7	4.7	4.6	4.6	4.5	8.9	8.7
한국	4.4	3.8	3.6	3.4	3.2	3.3	3.2	3.0	3.0	8.9	8.5	4.3	4.2	4.0
룩셈부르크	1.1	1.0	1.0	0.9	0.9	0.9	1.0	0.9	3.2	3.1	3.0	3.0	2.9	2.9
멕시코	10.9	1.7	1.5	1.4	1.4	4.8	4.6	4.5	4.3	4.2	4.0	29.1	28.4	26.6
네덜란드	1.4	1.4	1.4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1.4
뉴질랜드	1.7	1.6	1.5	1.5	1.4	1.6	1.5	1.5	1.4	1.4	1.3	1.3	1.2	1.2
노르웨이	2.4	2.5	2.1	1.9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폴란드	3.7	3.3	3.2	3.1	3.1	2.9	2.9	2.7	2.6	2.5	2.4	2.3	2.2	2.1
포르투갈	4.3	4.4	4.4	4.3	4.4	4.5	4.6	10.2	10.6	10.1	15.9	16.1	16.3	16.0
슬로바키아	4.0	0.5	0.5	0.5	0.5	0.4	0.5	0.5	0.4	0.4	4.0	3.9	3.8	3.7
슬로베니아	4.4	4.3	4.5	4.4	1.4	1.4	1.4	1.4	1.4	1.4	5.4	5.3	5.3	5.2
스페인	4.0	2.6	2.6	2.6	2.6	2.5	2.4	2.4	7.1	11.8	11.7	11.7	2.5	2.4
스웨덴	1.5	1.5	1.5	1.5	1.5	1.4	1.5	1.5	1.5	1.5	1.5	1.5	1.5	1.5
스위스	3.5	3.3	3.3	3.3	3.2	3.3	3.3	3.2	3.2	3.4	3.3	3.3	3.3	3.5
터키	9.3	10.4	5.3	3.0	3.7	3.5	3.5	4.7	4.5	4.5	4.3	4.0	3.8	3.5
영국	1.3	1.2	1.2	1.2	1.2	1.2	1.3	4.4	4.4	4.3	4.3	4.3	4.2	4.1
미국	8.9	8.8	8.8	8.7	8.4	8.4	8.6	8.4	8.3	8.3	8.3	8.2	8.2	8.0
OECD 평균	3.5	3.0	2.9	2.7	2.9	2.9	3.1	3.3	3.9	4.4	6.4	5.5	5.9	5.5

자료: OECD Tax Database.



- 2002년 이후 OECD 평균 무자녀 독신가구의 유효세율은 15%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2.2%에서 2016년 5.7%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2년 이후 소득세 평균유효세율이 증가한 나라는 덴마크,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며,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의 나라는 감소하는 형태
- 우리나라의 소득세 평균유효세율은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무자녀 독신가구(평균소득)의 평균유효세율은 5.7%, 2자녀 외벌이 가구(평균소득)는 3.3%, 2자녀 맞벌이 가구(평균소득과 평균소득의 67%)는 3.1%
 - 동 기간 OECD 평균 무자녀 독신가구(평균소득)의 유효세율은 15.7%, 2자녀 외벌이 가구(평균소득)는 10.1%, 2자녀 맞벌이 가구(평균소득과 평균소득의 67%)는 12.3%
 - 2015년 대비 2016년 우리나라의 평균유효세율은 전반적으로 상승
 - 무자녀 독신가구(평균소득의 67%)의 경우 +0.4%p, 무자녀 독신가구(평균소득)는 +0.3%p, 무자녀 독신가구(평균소득의 167%)는 +0.5%p, 2자녀 외벌이가구(평균소득)는 +0.4%p, 2자녀 맞벌이 가구(평균소득의 100-33%, 100-67%)는 +0.3%p, 무자녀 맞벌이가구(평균소득의 100-33%)는 +0.2%p

[표 24] 평균유효세율 추이(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 기준)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23.9	23.9	24.2	24.0	23.4	22.6	22.1	22.3	22.3	22.9	23.1	23.4	24.1	24.3
오스트리아	13.9	15.2	15.0	15.4	15.8	16.2	14.7	15.0	15.5	15.9	16.3	16.5	16.9	13.9
벨기에	28.0	27.9	28.0	27.9	28.1	28.5	28.3	28.7	28.8	28.7	28.4	28.3	28.1	26.8
캐나다	17.2	16.9	16.3	16.3	16.0	16.1	15.2	15.1	15.3	15.3	15.3	15.6	15.8	15.4
칠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체코	10.8	11.3	11.5	9.9	10.4	11.1	11.3	11.5	12.1	11.9	11.9	12.1	12.3	12.6
덴마크	31.6	30.2	30.1	30.2	30.4	30.2	28.8	27.9	36.1	36.2	35.8	35.6	36.1	36.2
에스토니아	22.0	20.9	18.8	18.1	18.1	17.3	16.8	16.7	16.9	17.1	17.5	17.7	16.8	16.7
핀란드	25.4	24.7	24.7	23.8	23.7	24.2	23.0	22.3	22.2	21.8	22.5	22.6	22.7	22.0
프랑스	14.9	15.0	15.3	14.0	14.1	14.1	14.2	14.2	14.2	14.4	14.5	14.7	14.7	14.8
독일	22.4	21.4	20.8	20.8	21.0	21.2	20.6	18.7	18.9	19.1	19.0	19.1	19.2	19.0
그리스	7.1	9.0	8.8	10.1	9.8	9.1	8.8	7.2	10.8	10.1	9.1	8.9	8.8	9.6
헝가리	20.5	20.9	20.2	20.9	21.8	21.3	20.8	14.4	17.6	16.6	16.0	16.0	16.0	15.0
아이슬란드	27.4	27.9	28.0	27.7	26.7	26.8	25.7	27.1	27.9	28.2	28.6	28.1	28.7	28.9
아일랜드	11.3	10.9	10.2	9.6	8.7	8.8	10.2	10.7	14.7	14.7	15.2	16.5	15.7	15.2
이스라엘	15.5	14.1	13.3	12.6	13.3	11.2	9.8	9.0	9.1	8.7	8.6	8.8	9.4	9.9
이탈리아	18.9	19.3	18.8	19.6	19.7	20.0	20.2	20.7	21.3	21.5	21.6	22.1	23.1	21.6
일본	6.6	6.6	6.7	7.2	8.1	8.0	7.9	7.6	7.6	7.6	7.6	7.6	7.7	7.8
한국	2.4	2.7	2.8	3.4	4.7	4.6	4.1	4.5	4.4	4.9	5.0	5.0	5.4	5.7
룩셈부르크	13.0	13.5	14.2	14.9	15.6	15.3	14.0	14.6	15.3	15.8	17.2	17.6	17.9	18.1
멕시코	3.1	3.7	3.1	3.5	4.6	3.8	4.1	4.3	7.9	8.2	8.4	8.7	9.0	9.5
네덜란드	10.3	10.8	11.2	13.2	14.6	15.5	16.6	16.2	16.4	17.1	15.8	16.1	16.7	16.9
뉴질랜드	19.5	19.7	20.0	20.4	21.1	20.5	18.1	17.0	15.9	16.4	16.9	17.3	17.6	17.9
노르웨이	22.4	22.3	21.2	21.3	21.7	21.8	21.5	21.5	21.6	21.4	21.4	20.6	20.2	19.7
폴란드	6.3	6.3	6.4	6.5	6.8	7.2	6.6	6.7	6.8	6.9	6.9	7.0	5.9	7.2
포르투갈	11.5	11.5	10.8	11.7	11.4	11.0	10.5	11.2	12.3	11.8	16.4	16.3	17.3	16.6
슬로바키아	7.8	8.4	8.4	8.7	8.9	9.4	8.0	8.3	9.4	9.4	9.4	9.5	9.7	9.8
슬로베니아	13.3	13.5	12.6	12.8	10.8	11.0	10.8	11.2	11.3	11.2	11.0	11.1	11.2	11.3
스페인	13.4	13.7	13.9	14.1	14.2	13.0	13.5	15.4	15.7	16.5	16.6	16.6	15.1	15.0
스웨덴	24.2	24.5	24.2	23.9	20.6	19.9	18.4	17.8	17.9	17.9	18.1	17.4	17.7	17.9
스위스	11.2	11.5	11.5	11.4	11.7	11.1	11.2	11.3	11.3	11.0	11.0	11.1	11.1	10.7
터키	14.8	15.5	15.5	15.4	15.4	12.7	12.1	12.0	12.1	12.1	12.4	12.4	12.5	12.3
영국	17.5	17.6	17.6	17.7	17.7	16.4	16.1	16.2	15.6	15.4	14.6	14.4	14.1	14.0
미국	16.8	16.7	16.6	16.8	17.2	16.8	15.7	16.1	17.2	17.2	17.0	17.2	18.0	18.3
OECD 평균	15.4	15.5	15.3	15.4	15.5	15.2	14.7	14.5	15.4	15.4	15.6	15.6	15.8	15.7

자료: OECD, Taxing Wages.



[표 25] 가구유형별 2016년 평균유효세율

(단위: %)

	무자녀 독신가구 (평균소득의 67%)	무자녀 독신가구 (평균소득의 100%)	무자녀 독신가구 (평균소득의 167%)	2자녀 독신가구 (평균소득의 67%)	2자녀 외벌이가구 (평균소득의 100%)	2자녀 맞벌이가구 (평균소득의 100%-33%)	2자녀 맞벌이가구 (평균소득의 100%-67%)	무자녀 맞벌이가구 (평균소득의 100%-33%)
호주	18.8	24.3	30.2	18.8	24.3	19.9	22.1	19.9
오스트리아	8.3	13.9	21.0	5.0	11.7	9.2	11.1	9.8
벨기에	19.5	26.8	34.5	14.1	15.1	19.3	22.4	21.2
캐나다	11.8	15.4	21.4	3.5	10.6	12.5	13.9	12.5
칠레	0.0	0.0	1.0	0.0	0.0	0.0	0.0	0.0
체코	8.9	12.6	15.6	-4.9	-4.2	2.5	5.6	9.5
덴마크	33.8	36.2	42.2	32.3	32.2	34.1	35.2	34.1
에스토니아	15.2	16.7	17.9	11.2	11.0	13.1	14.5	15.2
핀란드	15.0	22.0	29.4	14.4	21.9	16.9	19.0	17.1
프랑스	11.0	14.8	20.9	7.9	7.9	7.9	11.0	11.5
독일	14.0	19.0	27.5	-2.8	0.9	6.5	10.8	13.9
그리스	4.4	9.6	16.6	3.7	10.1	7.6	8.1	8.0
헝가리	15.0	15.0	15.0	1.5	5.9	8.2	9.6	15.0
아이슬랜드	25.0	28.9	34.0	25.0	21.5	25.0	27.3	25.0
아일랜드	8.7	15.2	27.4	2.5	6.8	8.7	12.0	8.7
이스라엘	5.3	9.9	17.3	-3.5	9.9	7.4	5.9	7.4
이탈리아	12.4	21.6	29.9	4.7	14.7	11.5	15.0	15.0
일본	6.2	7.8	12.7	6.2	6.4	6.9	7.2	6.9
한국	2.2	5.7	10.6	0.0	3.3	2.9	3.1	4.3
룩셈부르크	10.1	18.1	25.8	3.5	6.5	8.2	12.5	8.2
멕시코	2.5	9.5	14.0	2.5	9.5	5.2	6.7	5.2
네덜란드	6.4	16.9	27.9	4.5	16.4	12.7	11.9	13.2
뉴질랜드	13.6	17.9	23.6	15.0	17.9	16.5	16.7	16.5
노르웨이	16.3	19.7	26.2	12.9	18.6	16.7	18.4	16.7
폴란드	6.4	7.2	7.8	0.0	1.4	2.8	4.1	6.3
포르투갈	10.2	16.6	23.4	0.0	4.3	4.9	9.7	10.0
슬로바키아	6.6	9.8	12.5	-0.4	-1.5	3.9	5.7	7.4
슬로베니아	6.7	11.3	15.3	0.1	3.0	3.9	5.8	8.5
스페인	10.4	15.0	21.0	-4.6	7.7	9.9	11.0	11.3
스웨덴	15.2	17.9	31.4	15.2	17.9	15.6	16.8	15.6
스위스	7.8	10.7	15.5	2.1	4.2	5.7	7.9	8.3
터키	9.2	12.3	16.9	7.4	10.3	8.6	10.3	9.5
영국	11.0	14.0	22.3	-3.2	13.4	11.0	12.8	11.0
미국	15.4	18.3	23.7	-2.6	6.5	10.2	12.5	15.4
OECD 평균	11.4	15.7	21.5	5.6	10.1	10.5	12.3	12.4

자료: OECD, Taxing Wages.

나. 분리과세대상 소득

- 분리과세대상소득인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3년 이상 보유)의 경우 30%, 비실명금융소득은 그 요건에 따라 14/38/90%이나, 일반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14%
 -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14%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의 경우 6%의 원천징수로 소득세 부담이 종결되며,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음
 -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이외에 3억원 초과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30%, 그 외의 기타소득은 20%의 원천세율 적용

[표 26] 분리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종류	원천징수세율
(1)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	
(1-1)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10년 이상 만기의 장기채권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분리과세 신청한 그 이자와 할인액	30%
-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	38%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 거래할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14%
- 연도별 금융소득이 2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	14%



종류	원천징수세율
(1-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상환기간 7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으로서 2014. 12.31 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	14%
- 2014.12.31.까지 가입한 세금융대중합자축의 이자·배당	9%
- 2015.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회사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9%/14%
- 2016.12.31.0 이전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회사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5%/14%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조합원이 2015.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5%
- 농협회사법인으로부터 식량작물자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2015.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14%
-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의 배당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14%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금융기관 통해 지급되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	90%
-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의 이자	20%
(2)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1일 급여-100,000원)×6%×45% (100,000원: 근로소득공제, 45%: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외분)	6%
(3) 연금소득	
-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 일시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70%
- 퇴직연금액과 개인연금만을 합한 총연금액(연금소득 제외 소득과 비교소득을 제외한 금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	- 55세 이후 5% - 70세 이후 4% - 80세 이후 3% - 종신형 수령 4%

종류	원천징수세율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그 외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	3~5%
(4)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3억원 이하/3억원 초과)	20%/30%
- 그 밖의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4년 개정세법 반영

■ 현재의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14%)은 2005년부터 정착

- 1991년 이후 금융자산에 대한 방위세와 교육세 폐지를 계기로 이를 소득세로 흡수하고, 아울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991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종전의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한 세율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실명거래분은 20%로 함
- 1996년부터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였고, IMF사태로 1998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폐지되어 세율을 20%로 환원
- 경제가 안정된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하고 이자배당 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하였으며,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5년부터 14%로 인하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한 생계형저축과 20세 이상 일반가입자 ·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
-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대해 가입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표 27] 이자 · 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추이

(단위: %)

기간	기본			세금우대		
	소득 세율	주민 세율	합계	소득 세율	농특 세율 ¹⁾	합계
1991.1~1994.6	20	1.5	21.5	5	-	5.0
1994.7~1995.12				5	1.5	6.5
1996.1~1997.12	15	1.5	16.5	10	0.5	10.5
1998.1~1998.9	20	2.0	22.0	10	1.0	11.0
1998.10~1999.12 ²⁾	22	2.2	24.2	10	1.2	11.2
2000.1~2000.12	20	2.0	22.0	10	1.0	11.0
2001.1~2001.6	15	1.5	16.5	10	0.5	10.5
2001.7~2004.12	15	1.5	16.5	10	0.5	10.5
2005.1~2014.12	14	1.4	15.4	9	0.5	9.5
2015.1~	상동	상동	상동	폐지	폐지	폐지

주: 1) 농어촌특별세율: 저축감면액의 10% 가산(surtax)

2) 1998.10~1999.12 동안 이자소득세율만 22%로 상승시켰고, 배당소득세율은 20%로 이전 기간 (1998.1~1998.9)과 동일함

6. 세액공제 · 세액감면제도

가. 세액공제

- 세액공제(tax credits)는 과세관청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당해 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는 일종의 조세우대조치
 - 소득세의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
 - 2014.1.1. 소득세의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개편

[표 28] 주요 세액공제제도

	주요내용(공제금액 및 한도 등)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 ²⁾ 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배당세액(Gr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1%)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공제, 연 100만원 한도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31.까지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200원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전체종합소득에서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외국납부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제외) 총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액 중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¹⁾	산출세액13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50~74만원 한도(총급여 수준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한도 점감)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다자녀·6세이하·출생입양 자녀) 인원 및 유형에 따라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로 공제

4)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로는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음



	주요내용(공제금액 및 한도 등)
특별세액공제 ¹⁾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	전자신고 방법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발급 건수×18원 공제
기타조특법상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투자/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위한 설비투자/ 기술취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안전설비투자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환경보전시설 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고용창출투자/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전자신고/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주: 1) 근로자만 해당

2)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해 배당액에 11%를 가산(Gross-u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3~2015년 개정세법 반영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총급여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하여 과세포착율이 높고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해당 소득의 수령 시에 소득세액을 조기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근로소득에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인 경우 71.5만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다만,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50~74만원)이 차등

■ **1990년에 재신설한 근로세액공제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세액을 계속해서 확대**

- 1981년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 임시특별세액공제의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1981년 당해연도만 인정되었던 임시특별세액공제를 근로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1989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동 제도를 폐지함

- 그러나 1990년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산출세액 2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신설함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1996년 산출세액의 45%에서 2003년에 50%를 거쳐 2004년에 55%로 증가함(세액공제 한도 50만원)
- 2014년~2015년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 공제율 55% 적용대상을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66~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 한도)

[표 29]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제도	공제한도
1983	월급여 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30% 월급여 4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20% 월급여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	-
1990	모든 근로자: 산출세액의 20%	30만원
1991	총급여 3,60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만원
1993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6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50만원
1997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60만원
2001	상동	40만원
2003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45만원
2004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만원
2014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50~74만원
2015	상동	상동

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3) 2013~2015년 개정세법 반영



■ 자녀세액공제 등 인적공제

- 기존 소득공제로 운영되던 자녀양육관련 소득공제(다자녀 · 6세이하 · 출산입양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2017년부터 출산 · 입양공제를 자녀 1명당 30만원에서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확대 적용

[표 30] 인적공제 항목의 개편

항목	소득공제(~2014년 소득분)	세액공제(2014년 소득분~)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명 100만원 3자녀부터 1명당 200만원	자녀 1인 15만원 자녀 2인 15만원 (합계 30만원)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6세이하 자녀공제	6세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출산 · 입양공제	출산 · 입양 1명당 200만원	출산 · 입양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2017년 소득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공제율 12%)로 전환하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공제율 적용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합계액에 대한 한도는 400만원이나, 2015년부터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 2017년부터 종합소득 1억원 또는 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시 한도 300만원

[표 31]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의 개편

항목	소득공제(~2014년 소득분)	세액공제(2014년 소득분~)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12%로 전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5% 적용) • 공제한도는 400만원 (퇴직연금의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2017년부터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시 한도 300만원)

■ 특별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는 기존에 소득공제의 ‘특별공제’항목으로 운영되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기존의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5%
 - 2017년부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
 - 성실사업자의 경우 2018.12.31.까지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 공제
 - 2016년부터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조정
- 표준소득공제는 표준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 (근로자 13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표 32] 특별공제 항목의 개편

항목	소득공제(~2014년 소득분)	세액공제(2014년 소득분~)
의료비 공제	총급여 3%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 공제한도 등은 현행유지 • 단, 2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적용(2016.1.1.~)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학생 300만원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2%로 전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 적용) • 공제한도 등은 현행유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100만원 사업소득자 60만원 (성실사업자 100만원)	• 근로소득자 13만원, 사업소득자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표 33] 특별세액공제 요건

구 분	공제요건	한도	소득공제 (2014년 이전)	세액공제 (2014년 이후)	
특별 공제	의료비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본인, 고령자 및 장애인은 전액공제)	연 700만원	총급여 3% 초과한 지출금액	
	교육비 공제	본인 : ①학교교육비(대학원 포함) ②평생교육과정비용 ③국외교육비 ④업무훈련비 ⑤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기본공제 대상자 : 위의 ①-③ (대학원제외) ④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비 장애인 : 특수교육비	본인 : 전액 특수교육비 : 전액 대학생 : 연 900만원 그 외 : 연 300만원	지출금액	지출금액의 15% 단, 기부금 세액공제는 2천만원 초과 지출시 30%
	기부금 공제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산입(사업 소득자만 해당)과 기부금 공제방법 중 선택	법정 : 100% 지정 : 30% 종교 : 10%	지출금액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장애인 보험은 15%)
	표준 공제	근로자 :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비근로자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연 100만원 사업자 : 연 60만원 (성실사업자 : 연 100만원)	근로소득자 13만원, 사업소득자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연금저축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400만원 (2017년부터 급여 1억2천억원 초과시 300만원) (2015년부터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추가)	불입금액	지출금액의 12%(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무주택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 (한도 750만원)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세액(한도 750만원)의 10% 공제

나. 세액감면

- 세액감면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며, 일종의 조세우대조치
 - 종합소득금액에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대상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함(「소득세법」 제59조의5 ①)
 - 「소득세법」 이외 다른 법률,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를 감면함(「소득세법」 제59조의5 ②)
 - 소득세의 감면에 관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특히 「조특법」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

[표 34] 주요 세액감면제도

	주요내용(공제금액 및 한도 등)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단, 그 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동일한 면제 있는 경우만 해당)
조특법상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사업전환중소기업/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 기술기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공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일정기간 적용)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2014년 개정세법



7.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

[표 35]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개정 연혁

개정 (적용)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6·2017년 (2017년~)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도입인·방문판매원	(좌 동) '15년부터 자영업 자까지 확대적용 (단, 고소득 전문 직, 일정소득금액 이상 사업자 제외)	(좌 동)	(좌 동)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 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 여를 받은 자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 주거·생계 급 여를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	(좌 동)																																							
부양 자녀	1인 (18세미만)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좌 동) (단, 60세이상 단독 가구 가능)	(좌 동) (단, '16년 50대이상, '17년 40대이상 가능)	(좌 동) (단, '18년 30대 이상 가능)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부 부 합 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 만원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 자녀</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없음</td> <td>1,300</td> <td>70</td> </tr> <tr> <td>1인</td> <td>1,700</td> <td>140</td> </tr> <tr> <td>2인</td> <td>2,100</td> <td>170</td> </tr> <tr> <td>3인~</td> <td>2,500</td> <td>200</td> </tr> </tbody> </table>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좌 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단독 가구</td> <td>1,300</td> <td>70</td> </tr> <tr> <td>홀벌이</td> <td>2,100</td> <td>170</td> </tr> <tr> <td>맞벌이</td> <td>2,500</td> <td>210</td> </tr> </tbody>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단독 가구</td> <td>1,300</td> <td>77</td> </tr> <tr> <td>홀벌이</td> <td>2,100</td> <td>185</td> </tr> <tr> <td>맞벌이</td> <td>2,500</td> <td>230</td> </tr> </tbody>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홀벌이	2,100	185	맞벌이	2,500	230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벌이	2,100	170																																										
맞벌이	2,500	21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홀벌이	2,100	185																																										
맞벌이	2,500	230																																										
자녀 장려 세제	-	-	-	'15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 1인당 30~5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좌 동)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 세금 등 합계 1억원 미만	(좌 동)	(좌 동)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장려금 의 50%만 수급)	근로장려금 1억 4천 만원 미만(좌동), 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																																							
주택 요건	무주택 (5천만 원 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 (6천만원이하 1주 택 포함)	(좌 동)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	(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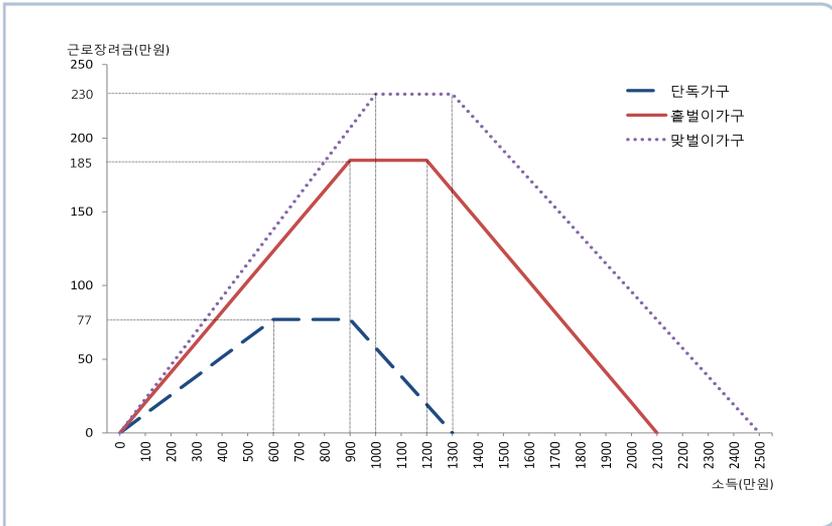
-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그 지급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 · 조정되어 왔으며, **현행 근로장려금 수급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가능**
 - 전년 귀속소득 기준 가구당 총소득⁵⁾ 합계액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소득요건은 부양자녀 수를 기준으로 차등설정 되었으나, 2014년부터 가구 구성별 차등설정 형태로 변경
 -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2012년 무자녀가구도 수급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13년부터 연령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도 포함
 - 연령기준은 2013년 60세 → 2016년 50세 → 2017년 40세 → 2018년 30세 이상으로 완화
 -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다만,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수급
 - 주택조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로 한정하였다가, 2014년 주택가격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2017년부터 주택요건을 아예 폐지
 - 2017년부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중복 허용.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결혼 및 맞벌이 여부) 및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지급액을 인상**
 -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연 77만원
 - 총급여 600만원 미만(점증구간): $\text{소득} \times \frac{77}{600}$
 - 총급여 600~900만원(평탄구간): 정액으로 77만원
 - 총급여 900~1,300만원(점감구간): $77\text{만원} - (\text{소득} - 900\text{만원}) \times \frac{77}{400}$
 -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지급액은 연 185만원
 - 총급여 900만원 미만(점증): $\text{소득} \times \frac{185}{900}$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의미(비과세소득은 제외)



- 총급여 900~1,200만원(평탄): 정액으로 185만원
- 총급여 1,200~2,100만원(점감): 185만원-(소득-1,200만원)× $\frac{185}{900}$
-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지급액은 연 230만원
 - 총급여 1,000만원 미만(점증): 소득× $\frac{230}{1,000}$
 - 총급여 1,000~1,300만원(평탄): 정액으로 230만원 지급
 - 총급여 1,300~2,500만원(점감): 230만원-(소득-1,300만원)× $\frac{230}{1,200}$

[그림 8] 근로장려세제 급여구조(2017년~)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6~9월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에 신청을 받고 3개월간 심사를 거친 후 매년 9월에 지급(기한 후 신청자는 90%만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나.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을 수급조건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①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 ②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존재, ③ 재산요건(2억 미만)을 만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자녀장려금 신청 연도 3월 기준)
 - 재산요건은 1억4천만원에서 2017년부터 2억원으로 조정되고, 주택요건은 삭제되는 등 수급조건이 완화
- 자녀장려금을 수급받는 사람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음
-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과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의 지급결정, 수급자 확인 조사 등은 근로장려세제 절차를 준용

[표 36]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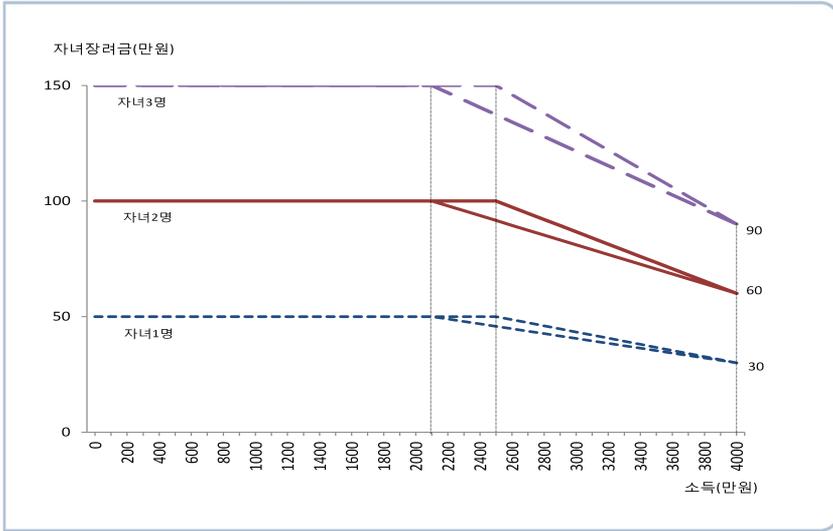
(단위: 만원)

가구원 구성	평탄구간		점감구간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소득기준	점감률
홀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100 ~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frac{20}{1,9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2,500 ~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frac{20}{1,500}$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201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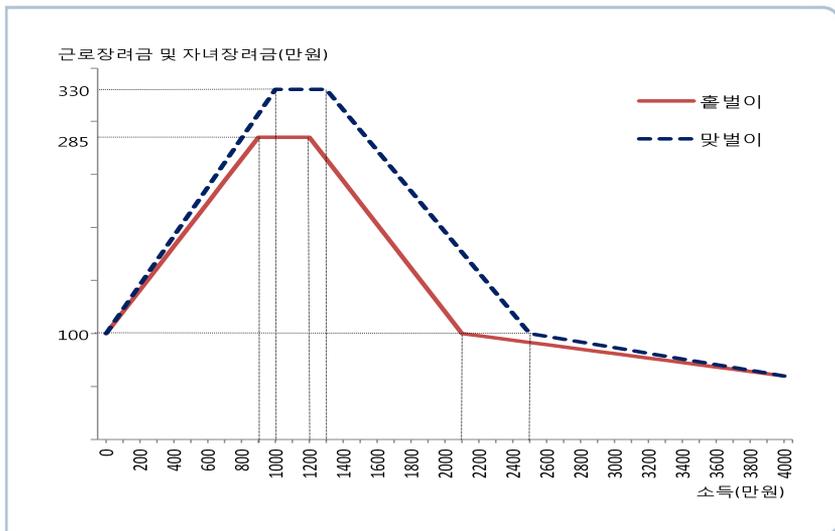


[그림 9] 자녀장려금 지급 구조(2017년~)



-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자녀 2명인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수급 가능

[그림 10]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중복 수급: 자녀 2명인 경우



8. 신고납부 등 세무행정

가.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로 변경됨
 - 원래 신고납세제도는 미국에서 채택되어 온 조세확정방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자기부과방식(self-assessment system)이라고도 불림(김완석, 2010)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존재함
 - 완납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 · 정산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임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단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 등은 제외함
 -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단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⑥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⑦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⑧ 분리과세이자소득 · 분리과세배당소득 ·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 ⑨ 위의 ①~⑦에 해당하는 자로서 ⑧의 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종교인소득에 과세 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음(2018.1.1.~)
- 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신고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
 -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인적 · 특별 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다만,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 가능
 - 필요경비명세서
 - 영수증수취명세서
 -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나. 확정신고자진납부

-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
 -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이란 다음의 세액을 의미
 - 중간예납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함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다. 신고방식

-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 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무신고시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근거로 결정
 -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 미만⁶⁾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간단한 장부만을 기장·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간편하게 신고가능
- 추계방식에 의한 신고
 - 과표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6)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허위일 경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방식으로 신고 또는 결정

라. 결정 또는 경정

- 만약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세액을 징수함
 - 결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립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임
 - 경정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서 확정하는 절차임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 단,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그러나 위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설사 이 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적법함

■ 결정·경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실액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직접증거를 갖추고 있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간접적인 증거에 바탕을 둔 추계방법에 따름

- 실액방법이란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거서류와 같은 직접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임
- 추계방법이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방법임
 -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 대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결정함

[표 37]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②-③-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①-②)
① 수입금액 ②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 자산의 임차료 ③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④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① 수입금액 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24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국세청, 『2014 생활세금시리즈』, 2014.

-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



마. 가산세

■ 가산세는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조세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금전벌임

- 가산세는 행정질서벌로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 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게 됨(김완석, 2010)
- 소득세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있음
 -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있음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
 -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증명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표 38]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

종 류	부 과 사유	가산세액	가산세 적용대상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① 일반적인 무신고·과소 신고	가산세대상금액×20% (또는 10%)	사업자여부 불문
	② 부당무신고가산세	가산세대상금액×40%	사업자여부 불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①가산세대상금액×20%)과 (②수입금액×7/10,000)중 큰 것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④ 복식부기의무자의 부당 무신고	(①가산세대상금액×40%)과 (②수입금액×14/10,000)중 큰 것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종 류	부 과 사 유	가산세액	가산세 적용대상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일반초과환급신고×10% 부당초과환급신고×40%	사업자여부 불문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	①가산세대상금액×40%과 ②수입금액×14/10,000중 큰 것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부정감면 가산세	부정감면 대상자	부정감면 · 공제세액×40%	사업자여부 불문
납부 · 환급불 성실 가산세	미납 · 미달납부, 초과 환급	미납 · 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기간×3/10,000	사업자여부 불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명	미제출 · 불분명 지급금액×2% (지연제출은 1%)	사업자여부 불문
계산서 관련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불명)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공급가액의 2%, 기 타 : 1%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 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미수취 · 불분명 금액×2%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추계자 제외)에 한함
영수증수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명	미제출 · 불분명 지급금액×1% (지연제출은 0.5%)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추계자 제외)에 한함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미신고 · 미달신고	미신고 · 미달신고 수입금액×0.5%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료업자등)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등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대한 허위등록 및 신고내용 무신고 · 허위신고	- 미등록· 거짓등록시 수입금액의 0.5% - 무신고· 거짓신고시 수입금액의 0.1%	공동사업자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 미달기장	무기장 · 미달기장 산출세액× $\frac{\text{소득금액}}{\text{소득금액}}$ ×20%	사업자(간판장부 대상자 포함, 소규모 사업자 제외)에 한함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미사용	- 미사용금액의 0.2%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0.2%와 미사용거래금액 합계액×0.2% 중 큰 금액	복식부기의무자



종 류	부 과 사유	가산세액	가산세 적용대상자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신용카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건별 거부 · 불명분 금액×5%와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	신용카드 가맹자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1% - 미발급 · 불명분 금액×5%와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	-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미납 · 미달 납부	미납 · 미달납부세액×기간×0.3% (최소 3%, 최대 10%)	사업자여부를 불 문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적용
납세조항 불납 가산세	납세조항이 미납 · 미달납부	미납 · 미달납부세액×5%	납세조항에만 적용
특정외국법인 서류 미제출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¹⁾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가산세율: 유보소득의 0.5% 한도: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사업자 여부 불문

주: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란, 저세율국 현지법인에 소득을 유보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2014년 개정세법 반영

9. 분류과세: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가.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연혁

- 양도소득세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1960년 12월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1967년 11월 29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1968년부터 과세 시작
 - 정부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고, 특히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전후하여 대도시와 고속도로 주변의 지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투기가 성행
 - 입법취지는 이와 같은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을 생산적인 시설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 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지역은 서울·부산과 그 인접지역의 토지에 한하고 토지의 양도 및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50%의 세율로 과세
-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고 투기대상 자산 및 지역도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1975년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제 내에서 분류 과세되는 세목으로 도입
 - 1975년 「소득세법」을 제정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흡수하면서 과세대상 자산에 건물을 추가하여 토지와 건물로 하고 과세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 세율은 토지의 경우 50%를 유지하고 건물의 경우 30%로 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액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예외로 기준시가를 적용
 - 또한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과세방법을 변경하고 양도소득 특별공제제도를 두어 물가상승률만큼 취득가액에서 추가 공제
- 1977년에는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종과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



도 고급주택은 과세로 전환하였고, 1979년에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편

- 세율을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50%를 기본으로 2년 이내 양도는 70%, 미등기 양도자산은 80%로 고율 과세
 -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을 위장한 투기를 막기 위해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요건을 강화
- 1983년에는 납세자를 상대로 실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는데 따른 조세미찰 및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차익의 결정을 실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획기적인 세법개정이 이루어짐
- 또한 양도소득 개선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의 7%를 필요경비로 공제
 -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984년 3월에서 1983년 6월로 앞당기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
- 1989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에 따라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단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신설
- 자산별·보유기간별로 정률에 의하던 양도소득세율을 개인별로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고, 그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5년 이상 보유는 5%, 10년 이상 보유는 1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제도를 신설
-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측면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매년 개정을 거듭
- 1990년에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대폭 축소
 - 1999년에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진작하기 위하여 고율이던 양도소득세율을 10% 인하하여 일반소득세율 수준으로 조정
 - 2007년부터는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전환
 - 2008년 이후의 양도소득세 개선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

- 2013년에는 과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사항을 정비하고,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한 혜택 마련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증과제도를 폐지(2014.1.1.)하고 지방 미분양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실시한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

[표 39]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내국세수(A)	양도소득세수(B)	구성비(B/A)
1975	10,123	19	0.2
1976	13,705	122	0.9
1977	16,752	137	0.8
1978	22,526	346	1.5
1979	30,375	390	1.3
1980	36,758	389	1.1
1981	45,958	590	1.3
1982	52,507	795	1.5
1983	61,884	1,133	1.8
1984	66,974	994	1.5
1985	74,969	930	1.2
1986	84,640	1,067	1.3
1987	100,120	1,368	1.4
1988	125,402	3,070	2.4
1989	152,084	5,654	3.7
1990	191,302	11,135	5.8
1991	240,892	12,587	5.2
1992	300,801	11,781	3.9
1993	341,746	13,545	4.0
1994	384,490	15,770	4.1
1995	443,820	17,612	4.0
1996	492,023	17,578	3.6



연도	내국세수(A)	양도소득세수(B)	구성비(B/A)
1997	521,532	19,566	3.8
1998	512,378	9,640	1.9
1999	563,931	9,933	1.8
2000	711,061	13,814	1.9
2001	740,273	14,808	2.0
2002	822,259	24,571	3.0
2003	922,312	28,975	3.1
2004	952,764	38,387	4.0
2005	1,044,279	44,522	4.3
2006	1,138,795	79,205	7.0
2007	1,325,081	112,920	8.5
2008	1,365,563	93,250	6.8
2009	1,364,769	73,080	5.4
2010	1,435,061	81,630	5.7
2011	1,596,018	73,890	4.6
2012	1,697,713	74,550	4.4
2013	1,688,458	66,571	3.9
2014	1,741,118	80,474	4.6
2015	1,852,403	118,561	6.4

자료: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OECD, Tax Database;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2)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및 현황

- 양도소득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얻는 소득
 - 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s) 중 특히 실현된 이득(realized gains)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다음과 같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

- 토지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유가증권: 대주주 등⁷⁾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과점주주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 파생상품(2016.1.1.~)

■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딸린 토지

[표 40]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개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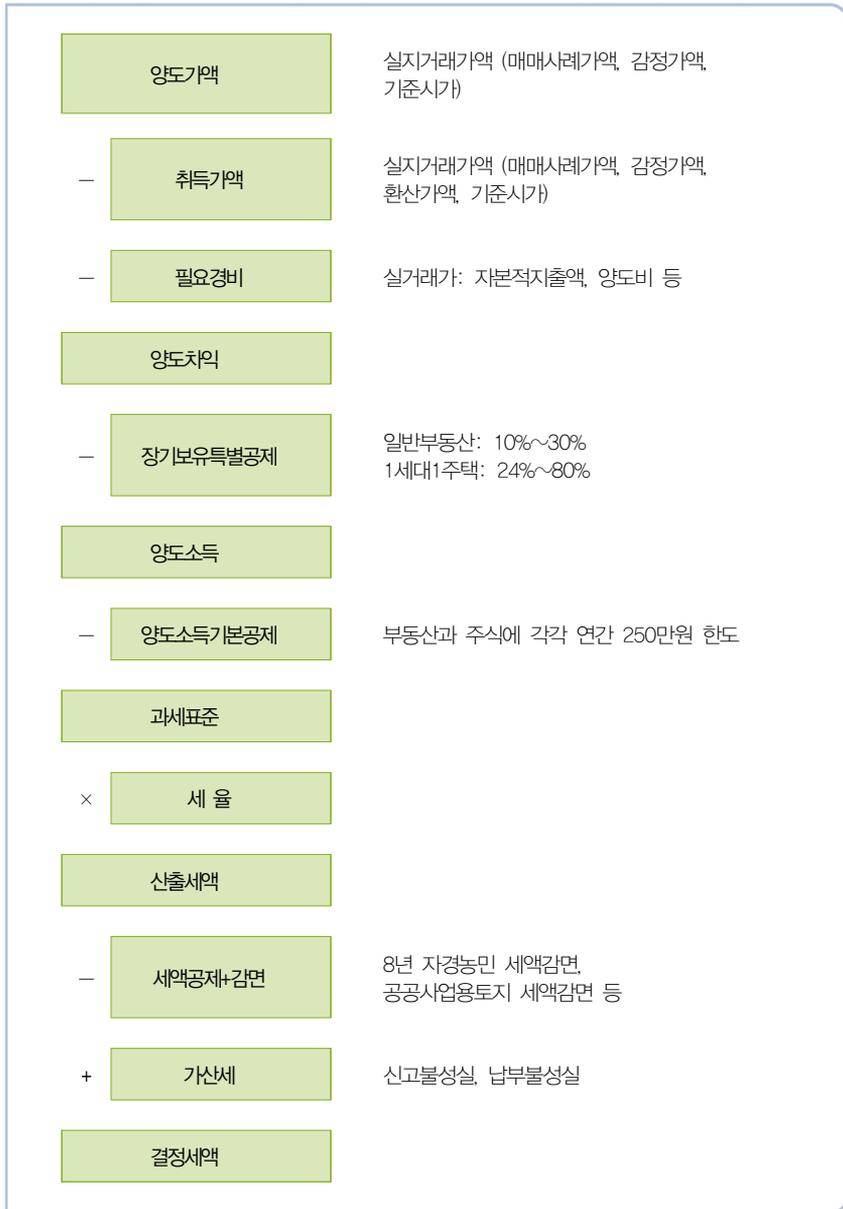
구분	양도시기 별 보유·거주 요건				
	2009.30. 이전	2003.10.1. ~12.31.	2004.1.1. ~2011.6.2	2011.6.3. ~2012.6.29	2012.6.29
서울·대전·5개 신도시 지역	3년이상 보유	3년이상 보유 + 1년 이상 거주	3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기타지역	3년이상 보유				

자료: 기획재정부, 『2014 세금절약가이드 II』, 2014.

- 7) 대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2017년 기준 총 발생주식의 1%(코스닥 주식 등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코스닥 주식 등 2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함
- 8)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②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④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경우 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⑥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⑦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그림 11]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토지 등과 주식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의 소득으로부터 연 250만원을 공제
 - ① 미등기자산을 제외한 토지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 2001.1.1.~), ③ 파생상품(2016.1.1.~)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로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개산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미등기자산 0.3%), 건물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 0.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7%(미등기자산 1%), 주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자산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1%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미등기자산에는 적용 배제)
 -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2017년부터 보유기간을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



[표 41] 장기보유특별공제 연혁

1975.1.1.~		1989.1.1.~1995.12.31		199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특별공제(물가상승 공제) 신설 ○ 보유기간 중 생산자물가상승률 (연 5%한도)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취득가액×공제율×보유기간 		〈좌동〉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	3년 이상 5년 미만	10%
		10년 이상	3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45%
2008.1.1.~		2008.3.21~		2009.1.1.~	
보유기간	일반부동산	〈좌동〉		〈좌동〉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08.1.1~3.20 양도분)				
3년 이상 4년 미만	10%	3년 이상 4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18%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21%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24%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30%	10년 이상 11년 미만	40%	10년 이상	80%
11년 이상 12년 미만	33%	11년 이상 12년 미만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36%	12년 이상 13년 미만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39%	13년 이상 14년 미만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42%	14년 이상 15년 미만	56%		
15년 이상	45%	15년 이상 16년 미만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76%		
		20년 이상	8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의 이원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기본세율은 자산의 종류, 등기 또는 등록 여부, 보유기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규모 및 주식의 소유 정도에 따라 누진세율(6~40%) 형태로 적용
- 1세대 3주택에 대한 과세는 2005년, 1세대 2주택에 대한 과세는 2007년부터 적용되었으며, 2014년부터 기본세율 적용
- 개인 등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추가과세를 유예해왔으나, 2016년부터 유예를 종료하고 10%p 추가과세(16~48%)를 적용
-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주에게 과세하나, 상장주식은 대주주 조건⁹⁾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과세
 -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20%로 과세하되, 1년 미만 대기업 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30% 적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1991년부터, 상장주식은 1999년부터 과세
- 파생상품에 대해 2016년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의 75%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9) 코스피시장: (16년4월) 유가증권시장 지분 1%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 → (18년4월) 지분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 (20년4월) 1%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코스닥시장: (16년4월) 유가증권시장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보유 → (18년4월)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 (20년4월)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표 42]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연혁

구 분	년 도		'04~'06	'07~'08	'09~'11	'12	'14	'16~'17
	〈개 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이상 보유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16년: 6-38) (17년: 6-40)	
	1~2년 보유	40	40	40	40	토지:40 주택:누진	토지:40 주택:누진	
	1년미만 보유	50	50	50	50	토지:50 주택:40	토지:50 주택:40	
	1세대 3주택 이상	60 (신설)	60	60	60	누진세율 ¹⁾	누진세율 ¹⁾	
	1세대 2주택	-	50 (신설)	50	50	누진세율	누진세율	
	비사업용 토지	-	60 (신설)	60	60	누진세율 ¹⁾	누진세율 +10%p	
	미등기	70	70	70	70	70	70	
기타자산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비상장 주식	대기업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10	10 (대주주20)	
	기타	20	20	20	20	20	20	
상장 주식	대기업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10	10 (대주주20)	
	기타	20	20	20	20	20	20	
파생상품							20(단력5)	
〈법 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기	10 (투기지역 30 (주택)	10 (투기지역 30 (주택,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사업용토지)	10 (투기지역 3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기타자산중 주식	미등기	20 (투기지역 40 (주택)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20 (투기지역 40 (주택,사업용토지)	

주: 1) 1세대 3주택자 이상 소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0%p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국세청 홈페이지

-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고, 세액감면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있는 때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전면 폐지하였고 그 대신 예정신고 미 이행시 가산세 부과함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상)
 -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종전농지 3년, 신규농지 3년 자경)



[표 43] 양도소득세 주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황(2016년 기준)

항목		법 조문
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6
세액 감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세 감면	조특법 제40조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특법 제43조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조특법 제66조 및 제68조
	영아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제67조
	8년이상자경농민에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69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69조의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70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조특법 제77조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77조의3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 등	조특법 제78조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감면 신축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등	조특법 제97조 및 제97의2 등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3 및 제98조의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9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제85조의1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6
수도권외지역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제99조의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함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함과 아울러 세액의 분산납부에 의한 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정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양도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함과 동시에 세액을 징수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함
 -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이행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도입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20%)를 과세
 - 거주자는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는 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가 대상
 -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에 의의



나.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은 장기간의 근무에 걸쳐 조성·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의 생활자금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과세
 - 퇴직소득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명예퇴직수당,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이 모두 포함
-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는 퇴직소득세의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으로 함
 - 퇴직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하게 되는 퇴직소득공제 안에 필요경비적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장기근속공제)을 포함하고 있음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 장기근속공제 - 정률공제(40%)
 - 2016.1.1. 소득분부터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로 대체

[표 44] 장기근속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0년 ~ 5년	30만원 × 근속연수
5년 ~ 10년	1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50만원
10년 ~ 20년	4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80만원
20년 ~	1,2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120만원

- 퇴직소득세의 산출세액은 평균과세의 방법으로서 연분연승법을 채택하고 있음
 - 2013.1.1. 이후 발생한 소득은 연분연승(5)를 적용하여 각각의 산출세액을 도출하였고, 이후 2016.1.1. 이후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해 연분연승(12)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

- 종전 퇴직소득에 비례하였던 정률공제(40%)를 폐지하는 대신 2016.1.1.소득분부터 환산급여 수준별 차등공제를 도입

- 환산급여 = 퇴직소득 과세표준 × $\frac{\text{연분12}}{\text{근속연수}}$

[표 45]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 800만원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 7,000만원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7,000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 3억원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left[\text{과세표준} \times \frac{\text{연분12}}{\text{근속연수}} (-) \text{차등공제}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6~38\%)} \times \frac{\text{근속연수}}{\text{연분12}}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결정세액)}$$

Ⅲ.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 1. 소득세 현황 93
- 2. 외국의 소득세 개편동향 100
- 3. 국내의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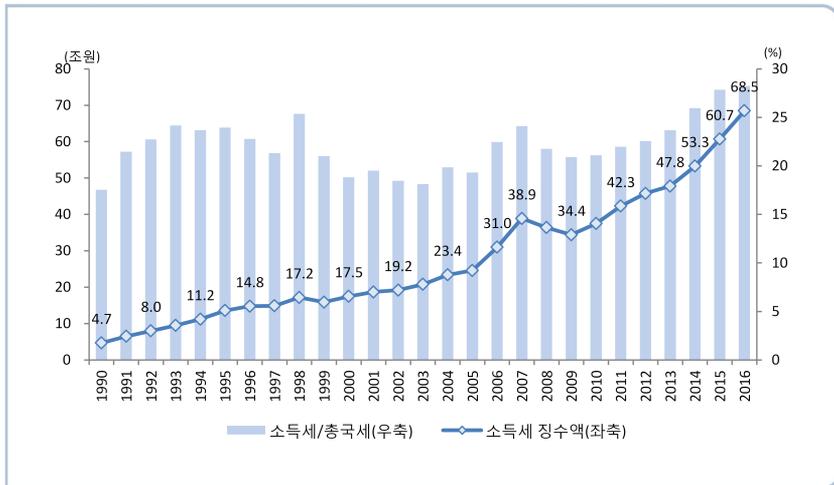
Ⅲ.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소득세 현황

가. 소득세수 추이

- 우리나라 소득세 징수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
 - 1990년 4.7조원, 2000년 17.5조원, 2010년 37.5조원, 2016년 68.5조원
- 총국세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이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
 - 1990년 17.5%, 2000년 18.8%, 2010년 21.1%로 소폭 증가추세
 - 최근에는 2015년 27.9%, 2016년 28.2%로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비중

[그림 12] 소득세 징수액 추이(199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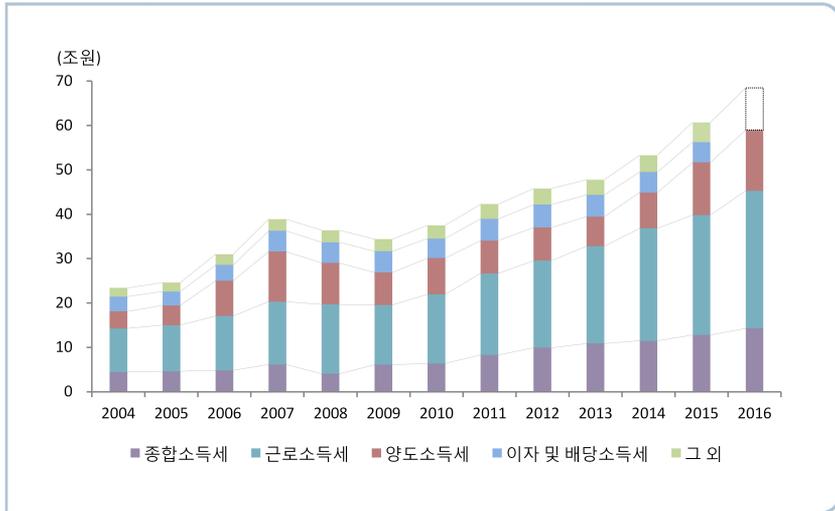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e-나라지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7.2.10.



- 2016년 소득종류별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14.3조원, 근로소득세 31.0조원, 양도소득세 13.7조원 수준¹⁰⁾
 - 소득세 징수액 68.5조원 중 근로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45%, 이하 2016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21%)와 양도소득세(20%) 순
 -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도소득세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경향
 - 2015년 대비 근로소득세는 14.6%, 종합소득세는 12.2%, 양도소득세는 15.4% 증가

[그림 13] 소득종류별 소득세 징수액 추이(2004년 이후)



주: 2016년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세와 그 외 소득세의 수치가 아직 구분·발표되지 않음.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7.2.10.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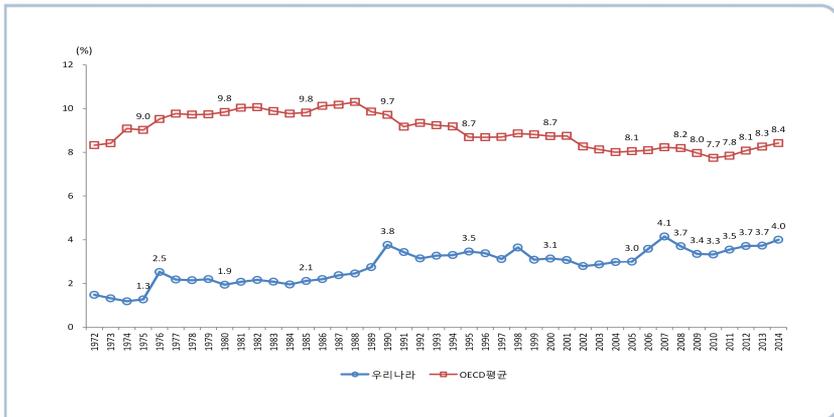
나. OECD 주요국과의 비교

- (유형①) 조세부담률이 높은 북유럽국가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2014년 기준 덴마크의 소득세는 GDP의 26.8%, 핀란드는 13.4%, 노르웨이는 9.8%, 스웨덴은 12.2%로 2014년 OECD 평균(8.4%)을 상회
 - 2014년 기준 덴마크의 소득세는 총세수의 54.0%, 핀란드는 30.6%, 노르웨이는 25.4%, 스웨덴은 28.6%로 2014년 OECD 평균(24.0%)을 상회
- (유형②) 사회보험료 비중이 높은 대륙형 유럽국가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수준
 - 2014년 기준 프랑스의 소득세는 GDP의 8.5%, 독일은 9.6%, 영국은 8.8%, 미국은 10.2%로 2014년 OECD 평균(8.4%)을 상회
 - 2014년 기준 프랑스의 소득세는 총세수의 18.7%, 독일은 26.3%, 영국은 27.4%, 미국은 39.3%로 2014년 OECD 평균(24.0%)을 상회
- (유형③) 최근 재정위기를 경험한 남부 유럽국가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 보다 낮은 경향
 - 2014년 기준 이탈리아의 소득세 비중은 GDP의 11.3%로 OECD 평균(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소득세는 각각 GDP의 5.9%, 7.6%, 7.7%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2014년 기준 이탈리아의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은 25.9%로 OECD 평균(2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소득세는 각각 총세수 대비 16.4%, 22.3%, 22.5%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유형④)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동유럽 국가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
 - 2014년 기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소득세는 각각 GDP의 3.6%, 5.3%, 3.0%로 OECD 평균(8.4%)을 하회
 - 2014년 기준 이들 국가의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도 각각 10.8%, 13.9%, 9.6%로 OECD 평균(24.0%)을 하회



- (유형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터키 및 일본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 보다 낮은 경향
 - 2014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터키, 일본의 소득세는 각각 GDP의 5.8%, 4.2%, 6.1%로 OECD 평균(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으로 이들 국가의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도 각각 18.6%, 14.7%, 18.9%로 OECD 평균(24.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최근 소득세 부담 비중이 늘어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GDP의 4.0%, 총세수의 15.3%로, 2014년 OECD 평균(8.4%, 24.0%)에 비해 각각 4.4%p, 7.8%p 낮은 수준
 - OECD 평균과 우리나라 간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의 차이는 1980년 19.9%p, 2010년 9.0%p, 2014년 7.8%p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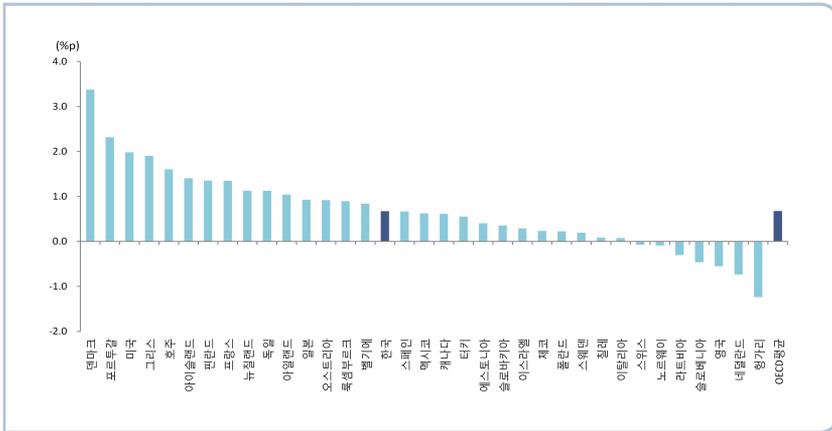
[그림 14] 우리나라와 OECD(평균) GDP대비 소득세 비중 추이(1972~2014년)



자료: OECD Tax Databas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의 2010년 대비 2014년의 소득세 비중 증가폭(+0.7%p)은 OECD 평균 증가폭(+0.7%p)과 거의 유사한 수준

[그림 15] 2010년 대비 2014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변화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46] OECD국가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7.9	11.5	12.1	11.5	9.8	10.3	10.7	10.7	11.4	-
오스트리아	7.0	9.0	8.3	9.3	9.2	9.2	9.6	9.8	10.1	10.6
벨기에	8.3	14.7	13.2	13.7	12.0	12.2	12.3	12.9	12.9	12.6
캐나다	9.8	10.4	14.4	12.8	10.7	11.0	11.3	11.2	11.3	11.8
칠레	-	-	0.9	1.4	1.3	1.4	1.5	1.4	1.4	1.5
체코	-	-	-	4.2	3.3	3.5	3.6	3.7	3.6	3.6
덴마크	18.3	21.6	24.0	24.7	23.4	23.4	23.4	25.5	26.8	25.4
에스토니아	-	-	-	6.8	5.3	5.1	5.2	5.4	5.7	5.8
핀란드	12.2	12.6	14.9	14.0	12.1	12.3	12.5	12.8	13.4	13.3
프랑스	3.6	4.6	4.4	7.8	7.2	7.4	8.0	8.4	8.5	8.6
독일	8.4	10.8	9.6	9.2	8.5	8.8	9.3	9.5	9.6	9.9
그리스	1.9	3.1	3.6	4.8	4.0	4.8	7.0	6.0	5.9	-
헝가리	-	-	-	7.2	6.5	5.1	5.7	5.4	5.3	5.0
아이슬란드	5.3	6.7	8.1	12.6	12.2	13.0	13.2	13.8	13.6	13.3
아일랜드	5.0	9.6	10.7	9.8	8.1	8.4	8.9	9.0	9.2	7.5
이스라엘	-	-	-	10.1	5.5	5.5	5.3	5.5	5.8	6.1
이탈리아	2.7	6.6	9.6	10.1	11.2	11.0	11.6	11.6	11.3	11.3
일본	4.1	6.0	7.9	5.6	5.1	5.3	5.5	5.8	6.1	6.1
한국	-	1.9	3.8	3.1	3.3	3.5	3.7	3.7	4.0	4.4
리투비아	-	-	-	5.5	6.2	5.6	5.8	5.8	5.9	5.9
룩셈부르크	5.4	9.2	8.1	6.9	8.0	8.4	8.5	8.7	8.9	9.0
멕시코	-	-	-	-	2.4	2.4	2.5	2.6	3.0	3.4
네덜란드	8.9	10.6	9.9	5.6	7.8	7.4	7.0	6.9	7.0	7.7
뉴질랜드	11.0	18.3	17.4	14.0	11.4	11.3	12.1	11.9	12.6	12.5
노르웨이	12.1	11.9	10.5	10.1	9.9	9.7	9.7	9.9	9.8	10.4
폴란드	-	-	-	4.3	4.4	4.3	4.5	4.5	4.6	-
포르투갈	-	-	4.2	5.4	5.4	6.0	5.8	7.7	7.7	7.3
슬로바키아	-	-	-	3.3	2.7	2.8	2.9	2.9	3.0	3.2
슬로베니아	-	-	-	5.5	5.6	5.6	5.7	5.2	5.1	5.1
스페인	1.8	4.5	6.9	6.4	6.9	7.2	7.4	7.5	7.6	7.2
스웨덴	17.8	18.0	19.1	16.3	12.0	11.7	11.9	12.2	12.2	12.5
스위스	6.5	9.1	7.7	8.2	8.4	8.4	8.5	8.4	8.4	8.7
터키	2.5	5.8	4.0	5.4	3.7	3.8	4.0	4.1	4.2	4.4
영국	11.0	9.8	9.7	9.6	9.3	9.4	9.0	9.0	8.8	9.1
미국	9.4	10.0	9.8	11.9	8.2	9.3	9.3	9.9	10.2	10.7
OECD평균	7.9	9.8	9.7	8.7	7.7	7.8	8.1	8.3	8.4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득세 모두 포함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47] OECD국가의 총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37.3	44.0	43.0	37.8	38.4	39.3	39.1	39.0	41.0	-
오스트리아	20.7	23.2	21.0	22.2	22.5	22.5	22.9	22.9	23.6	24.3
벨기에	25.1	36.4	32.0	31.4	28.2	28.2	27.8	28.5	28.6	28.1
캐나다	32.4	34.1	40.8	36.8	35.0	36.1	36.4	36.2	36.3	36.8
칠레	-	-	5.6	7.6	6.8	6.6	6.8	7.2	7.3	7.1
체코	-	-	-	12.9	10.2	10.6	10.6	10.7	10.8	10.8
덴마크	49.1	52.3	54.0	52.7	51.9	51.7	51.1	54.5	54.0	54.5
에스토니아	-	-	-	22.0	15.9	16.1	16.4	17.2	17.5	17.2
핀란드	39.2	35.7	34.7	30.6	29.5	29.2	29.3	29.3	30.6	30.2
프랑스	10.7	11.6	10.7	18.0	17.1	17.2	18.1	18.6	18.7	18.9
독일	26.7	29.6	27.6	25.3	24.3	24.7	25.7	26.1	26.3	26.7
그리스	9.7	14.9	14.1	14.5	12.3	14.1	19.6	16.8	16.4	-
헝가리	-	-	-	18.6	17.4	13.9	14.7	14.0	13.9	12.7
아이슬랜드	19.9	23.1	26.9	34.8	36.5	37.6	37.4	38.3	34.9	35.9
아일랜드	18.3	32.0	33.1	31.9	30.0	31.1	32.4	31.9	32.0	31.8
이스라엘	-	-	-	29.1	18.0	18.0	18.0	17.8	18.6	19.6
이탈리아	10.9	23.1	26.3	24.8	26.8	26.3	26.4	26.4	25.9	26.2
일본	21.5	24.3	27.8	21.1	18.6	18.4	18.6	19.2	18.9	-
한국	-	11.5	20.0	14.6	14.2	14.7	15.0	15.3	16.3	17.4
리투아니아	-	-	-	18.8	22.2	20.2	20.2	20.3	20.5	20.4
룩셈부르크	23.9	27.0	24.1	18.5	21.0	22.2	21.9	22.9	23.2	24.5
멕시코	-	-	-	-	16.7	17.3	18.3	18.1	19.7	-
네덜란드	26.8	26.3	24.7	15.1	21.5	20.8	19.4	18.8	18.7	20.5
뉴질랜드	44.0	61.6	48.0	43.1	37.7	37.0	37.7	38.0	38.6	38.2
노르웨이	35.2	28.5	26.2	24.1	23.6	23.1	23.4	24.8	25.4	27.4
폴란드	-	-	-	13.2	14.0	13.7	14.0	14.1	14.3	-
포르투갈	-	-	15.9	17.4	17.6	18.4	18.3	22.6	22.5	21.2
슬로바키아	-	-	-	9.9	9.5	9.9	10.3	9.6	9.6	9.8
슬로베니아	-	-	-	15.0	15.1	15.3	15.4	14.0	14.0	14.1
스페인	11.5	20.4	21.7	19.1	21.9	22.8	22.9	22.5	22.3	21.3
스웨덴	49.8	41.0	38.5	33.2	27.9	27.5	28.0	28.4	28.6	28.8
스위스	35.7	38.9	32.8	29.8	31.9	31.0	31.6	31.2	31.0	31.1
터키	27.0	43.5	26.8	22.2	14.0	13.5	14.4	13.9	14.7	14.6
영국	31.5	29.4	29.4	29.3	28.7	28.1	27.5	27.7	27.4	27.9
미국	36.6	39.1	37.7	42.2	34.8	38.8	38.5	38.7	39.3	40.8
OECD평균	28.0	31.3	28.6	24.6	23.2	23.3	23.7	23.9	24.0	-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득세 모두 포함

자료: OECD Tax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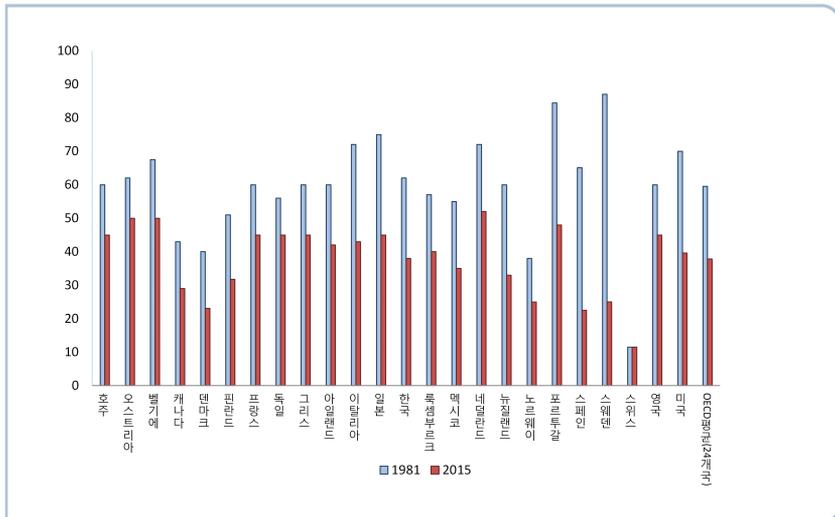
2. 외국의 소득세 개편동향

가. 개관

- 1970년대 이후 OECD 주요 국가의 소득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조세정책의 변화와 개인소득세의 근본적인 개혁에 기인
 - OECD국가(평균)의 총 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수준(지방세 포함)은 1970년 28.0%에서 1980년 31.3%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 24.0%까지 감소
 - 이러한 추세는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비중 증가와, 소득세 대비 소비세(consumption taxes)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
 - 세율은 확대하면서 명목세율을 감소시키는 개인소득세 개혁도 요인
 - 2015년 기준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을 1981년에 비해 인하하였고, 소득세 과표구간 수도 1981년에 비해 감소

[그림 16] OECD국가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1981년과 2015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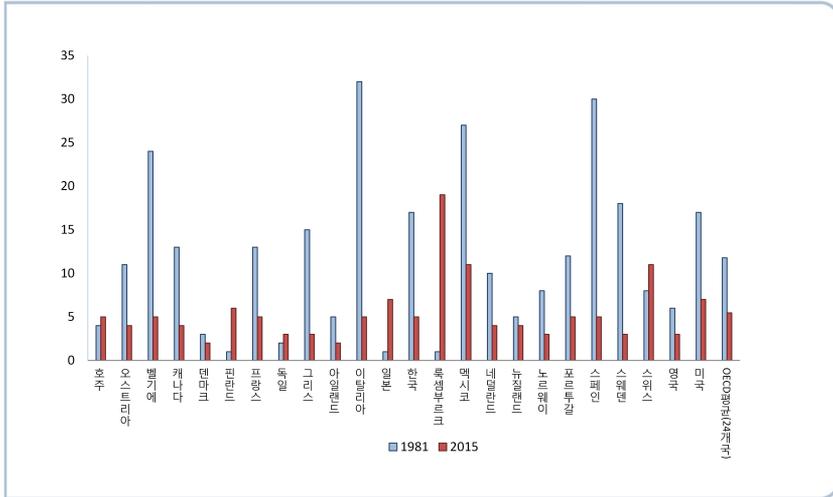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2016.

[그림 17] OECD국가의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 1981년과 2015년 비교

(단위: 개)



자료: OECD, Tax Database, 2016.

■ 세원 확대 및 세율 인하라는 세제 개편의 방향은 재정부담, 경제적 효율성, 조세체계의 복잡성 요인 때문

- 인구고령화와 장기적인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의 필요가 확대
- 또한 세계화 진전으로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제적 이동성이 큰 세원으로부터 세수입을 확보하는 능력이 점점 축소
 - 특히 투자에 대한 법인세, 자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이동성이 강한 고소득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세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
-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의존하였던 누진세율구조 하의 높은 한계세율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
 -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은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
- 모든 명목상 소득을 포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체계 하에서 다단계 세율구조에 따른 조세체계의 복잡성과 과세표준 결정에서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조세



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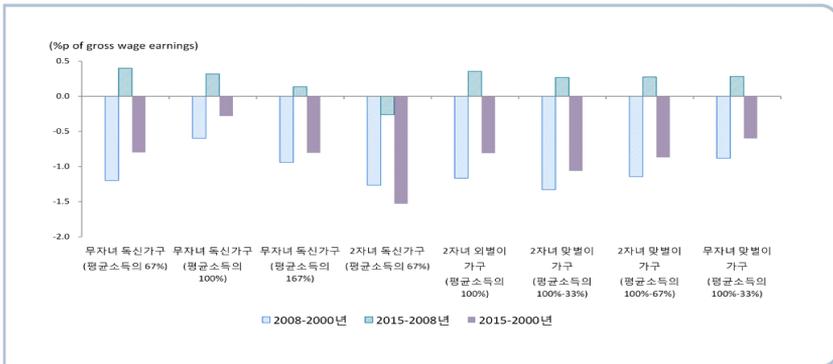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재정적자의 감축 및 적정 세원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세율 인하 추세에서 벗어나 소폭 인상 등의 조치가 시행

-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 40.3%에서 2007년 35.7%, 2009년 35.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15년 현재 35.9% 수준
 - 2000년 대비 2015년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일본 · 한국 · 미국 등 13개 국가이며, 그리스 · 영국 등 8개국은 최고세율이 낮아진 모습
 - 고소득자에 대한 연대세(solidarity tax)¹¹⁾를 부과하는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은 대개 재정적자를 해소할 때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

■ 저소득자 및 자녀양육자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 감면이 늘어나는 추세

- 2000년에 비해, 2008년 OECD 주요국 평균 실효세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
- 2008년에 비해, 2015년 OECD 평균 실효세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전의 감소폭을 상쇄할 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2000년에 비해, 2015년 OECD 평균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

[그림 18] 2000년 대비 2015년 가구유형별 OECD 평균 실효세율 비교



주: 평균실효세율(average income tax burden)은 총급여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의 비율로 계산
자료: OECD, Tax Database, 2016.

11) 연대세란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지는 취지로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나. 주요 국가들의 개편동향

-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소득세 개편방향을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조치 등을 시행
 - 미국은 부시 정부 시기 경기부양책으로 2001년과 2013년에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과표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소득세율을 15~39.6%에서 10~35%로 인하
 -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 51%이었으나, 2002년 48.5%, 2004년 45%, 2005년 42%까지 인하
 - 일본의 경우 1992년 이후 지속된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1990년 50%에서 2006년 37%로 인하
- 동 시기 OECD 국가들은 세제개혁을 통해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1990년대 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도입한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가 대표적인 사례
 -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을 평균 7.2%p 인하(2000년 50.2% → 2006년 43.0%)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미국, 일본, 스페인, 스위스 등은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전적 과세방법(classical system)에서 벗어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modified classical system)로 전환
 -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이태리, 포르투갈, 터키 등은 수입배당금의 일부만을 개인주주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제도(partial inclusion system)로 개편함
-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투자·소비행위 등과 연계된 감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
- 다만, 동 시기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부분적 증세조치도 시행됨
 - 영국은 기존의 최고세율 40%에서 2010년 추가적으로 50% 세율구간을 신설하였다가, 2013년 다시 45%로 인하



- 2013년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도 42.5%에서 37.5%로 인하
-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납세자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¹²⁾을 통해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산층 이하 가계에 대해서는 공제 등 감세정책을 지속한 바 있음
 - 최고세율 39.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을 신설(2016년 기준 독신가구 과표 약 41.5만달러, 부부합산가구 약 46.7만달러 초과)
 - 고소득층(독신가구 25만달러 초과)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한도를 축소
 - 「의료법 개정(Affordable Health Care Act of 2012)」으로 추가적 의료세 부과: 근로자에 대한 의료세(health insurance tax, 독신가구 20만 달러 초과인 경우) 0.9%, 순투자소득에 대한 의료세(medicare contribution tax) 3.8%
 - 오바마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통해 고소득자(독신가구 50만 달러 초과)가 총소득(AGI)의 30% 이상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안(Fair Share Act, buffet rule)과, 고소득자(소득세율 33% 이상)의 조세지출을 과세소득의 28%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안¹³⁾
- 독일은 최고세율 인하 정책으로 2006년 최고소득구간(과표 5.2만유로 초과)에 42%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 최고구간을 추가로 신설(과표 25만유로 초과하는 경우)하고 45%의 세율을 적용
- 프랑스는 최고소득구간(과표 15만유로 초과) 대상 최고세율을 41%에서 45%로 인상
- 일본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2007년 최고세율을 37%에서 40%로 인상한 후, 2015년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4,000만엔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45%의 세율을 적용
- 재정위기를 경험한 남유럽국가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2013년 유럽의 재정지원에 따른 증세조치의 일환으로 최고구간의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조치를 취함

12) 부시행정부에서 실시(2001년 및 2003년)한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은 당초 2010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종료가 2년 유예되어 2012년 말로 종료하게 되었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 감면법(ATRA of 2012)」은 이러한 감세정책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3) 2016년 2월 10일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

- 최고세율 경우, 그리스가 2009년 40.0%에서 2013년 42.0%로, 포르투갈은 2009년 42.0%에서 2013년 48%로, 스페인은 2009년 27.1%에서 2013년 30.5%로 인상
 -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고소득자에게 2.5%~5%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형평성 개선을 위해 2011년 말에 최고구간(38%)을 신설하였고, 2014년에 최고세율의 적용 과세표준 기준을 3억원이상에서 1.5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추가로 최고세율(40%) 구간을 신설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 및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자본소득에 관한 세금부담을 인상하는 조치도 시행**
- 미국은 「미국 납세자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을 통해 종합소득(ordinary income) 기준 세율 39.6%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얻는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
 - 영국은 2008년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적용하던 누진세율을 18%의 단일세율로 변경하였으나, 2013년 종합소득 기준 세율이 40% 이상인 고소득자에 한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28%로 상향조정
 - 오스트리아는 2012년 4월부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벨기에는 2011년 이자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
 - 독일은 2008년 배당소득세 50%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원천징수세율이 개인소득 한계세율보다 높은 경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는 이자와 배당소득세율을 종전 18%에서 2011년 19%로, 2012년에는 각각 21%(이자소득)와 24%(배당소득)로 인상하였다가, 2013년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배당소득은 40% 공제 후 과세)
 - 배당소득 세액공제제도와 소액자본이득 비과세제도를 폐지
 - 일본은 2008년부터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특례세율 10%(국세 7% 및 주민세 3%)를 부과하였으나, 2014년부터 20%(국세 15% 및 주민세 5%) 수준으로 인상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총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근로세액공제 확대 등 노동공급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비과세 · 감면 정책이 중심이 되는 추세

- 미국은 「미국 납세자 세금감면법(ATRA of 2012)」 이후 중등교육과정 이상 학생에 대한 세액공제(AOTC) 확대,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양육관련 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
- 오스트리아는 가족세액경감제도를 도입해 자녀소득공제, 자녀관련 세액공제, 보육비용 공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자녀보육비 보조금 면제 등
- 캐나다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금혜택을 증가시키고, 주택수리비용 및 최초주택구매자에 대한 일시적인 세액공제를 도입
- 핀란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근로소득세액공제(a labor income tax credit)를 도입
- 독일은 2010년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 기본공제가 매년 인상되는 추세(16년 8,652유로→17년 8,820유로)이며, 자녀소득공제(16년 2,304유로→17년 2,358유로) 및 세액공제(자녀 수에 따라 월 '16년 190~221유로→17년 192~223유로) 금액도 증가
- 스페인은 일부 개인납세자에게만 허용되던 주택구입세액공제가 2012년부터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확대 적용

[BOX] 최근 미국의 소득세 개편 논의 동향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
(“2017 Tax Reform for Economic Growth and American Jobs”, 백악관 브리핑 자료, 2017.4.26.)
 - 소득세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현재 7개인 과표구간을 3개로 축소하고,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 (세율 10/15/25/28/33/35/39.6% → 세율 10/25/35%)
 - *각 세율에 해당하는 과표구간 기준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음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세금우대 조치들은 축소(모기지 · 기부금 공제는 유지)

- 고소득자에 적용하는 최저한세(alternate minimum tax) 폐지
- EITC 및 자녀양육 관련 지출을 확대
- 오바마 정부의 순투자소득세(3.8%) 등 폐지
- 그 외 법인세율 인하(35% → 15%), 유산세(death tax) 폐지 등을 포함
-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위의 내용과 관련해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원 및 하원과 세부적인 방안에 관해 협의할 계획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이 단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및 소득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음**
 - 미국 정책연구기관 Tax Policy Center는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2026년까지 10년간 약 6.2조 달러(소득세 3.3조 달러)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음¹⁴⁾

[참고] 미국의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부담 현황(2014년)

한계세율	부부합산 시 과표구간(\$)	신고건수 (만건)	비중 (%)	소득세액 (\$bn)	비중 (%)
0%		3,596	24.2	0	0
10%	~18,150	2,734	18.4	15.9	1.1
15%	~73,800	4,296	28.9	168.5	12.0
25%	~148,850	2,466	16.6	339.1	24.2
28%	~226,850	489	3.3	167.9	12.0
33%	~405,100	191	1.3	145.6	10.4
35%	~457,600	19	0.1	23.9	1.7
39.6%	457,600 ~	98	0.7	448.6	32.0
전체		14,861		1,402.4	

주: 1) 소득세 신고 중 자본소득(capital gain) 관련 등 약 972만건은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Publication 1304, 2016.

14) James R. Nunns et al., "An analysis of Donald Trump's Revised Tax Plan", Tax Policy Center, 2016.10.18.



3. 국내의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 과세기반 확보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년대비 2014년 귀속 소득분의 경우 저소득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고소득 구간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증가¹⁵⁾
 - 2013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녀양육관련 공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 특별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 등
 - 개정세법이 적용된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2015년 2월), 정부가 당초 발표한 바와 달리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추가 보완정책에 대한 요구가 쇄도
 - 2015년 5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2014년 귀속 소득에 소급하여 적용
 - 하나로 통합되었던 자녀세액공제를 종전대로 다자녀·6세이하 자녀·출산(입양)자녀에 대해 분리해 적용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확대 적용(12% → 15%)
 - 근로소득세액공제율 55% 적용 기준 세액을 상향조정(50만원 → 130만원)하고, 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 대해 공제세액 한도 인상
-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및 2015년 후속 보완대책으로 2014년 귀속 소득 기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도리어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
 -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3년 귀속 소득 기준 약 530만명에서 2014년 약 802만명으로 약 272만명 증가하였으며, 2015년 약 810만명 수준

15)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함
 - 소득공제 하에서는 자신이 속한 구간의 소득세율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결정됨
 - 세액공제 하에서는 공제율이 일정해, 세액공제율(예. 15%)보다 종전 자신의 소득세율(예. 6%)이 낮은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예. 38%)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

- 전체 과세대상 인원 대비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약 15.7%p 증가하였으며, 2015년은 46.8% 수준

[표 48]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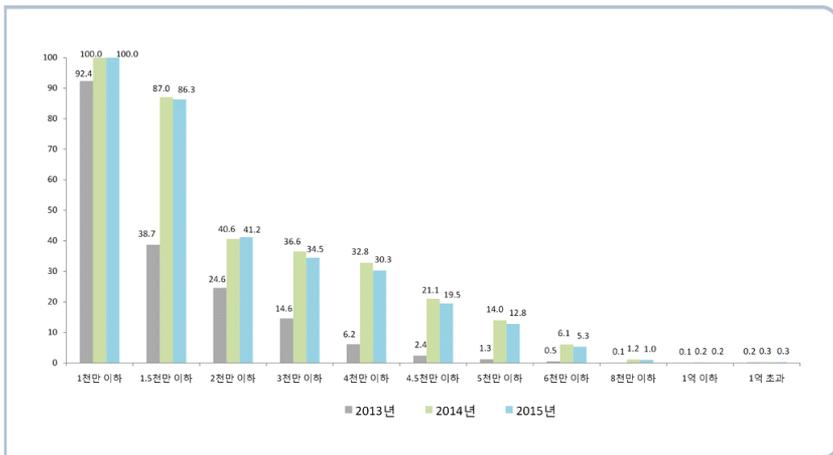
(단위: 만명 %)

연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납세대상자	1,190	1,518	1,554	1,577	1,636	1,669	1,733
면세자	582	596	562	523	531	802	810
면세자 비율	48.9	39.2	36.2	33.2	32.4	48.1	46.8

자료: 국세청,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2013년 대비 2014년 면세자 비율은 거의 전 소득구간에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각 개인별 적용 소득세법 변동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면세자 비율이 소폭 감소

[그림 19]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 변화(2013~2015년)



주: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해당 구간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비율로 계산

자료: 국세청,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면세자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
 - 면세자는 개인의 소득수준, 인적구성, 지출수준 및 목적에 따라 개개인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공제·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 각 개인에 일정액의 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인두세의 특성
- **다만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최근의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 2014년 근로소득 총 신고자 4,756만여명 중 면세자의 비율은 15.4%¹⁶⁾
 - 미국의 2014년 기준 급여(salaries and wages) 과세신고 1.2억건 중 면세자로 분류된 신고건수의 비율은 32.5% 수준¹⁷⁾
- **지나치게 확대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나,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문제임**
 - 일각에서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방안, 세액공제에 대한 종합한도 설정 등 공제액 축소 방안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신중한 검토 필요¹⁸⁾
 -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세부담 조정을 위해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도 있음
 - 조세정책의 취지와 그 효과를 국민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방적 세부담이 아닌 재정지출로 인한 편익과 상호 결부되어 있다는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

16) 일본 국세청, 통계연보.

17) IRS, SOI Tax Stats.

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도한 면세자 비율 및 불안정해진 세법의 정상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부대의견”, 2015.5.)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저한세 도입 등 면세자 비율 축소 대안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정책 일관성 문제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바 있음

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현황과 해외사례

(1) 현황

- 근로장려금(2008년 도입, 이하 귀속 기준)과 자녀장려금(2014년 도입)의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 완화 등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

[표 49]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개정 연혁

개정 (적용)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6·2017년 (2017년~)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좌 동) '15년부터 자영업 자까지 확대적용 (단, 고소득 전문 직, 일정소득금액 이상 사업자 제외)	(좌 동)	(좌 동)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 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 주거·생계 급 여를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	(좌 동)																																							
부양 자녀	1인 (18세미만)	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	(좌 동) (단, 60세이상 단독 가구 가능)	(좌 동) (단, '16년 50대이상, '17년 40대이상 가능)	(좌 동) (단, '18년 30대 이상 가능)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부 부 합 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 만원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 자녀</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없음</td> <td>1,300</td> <td>70</td> </tr> <tr> <td>1인</td> <td>1,700</td> <td>140</td> </tr> <tr> <td>2인</td> <td>2,100</td> <td>170</td> </tr> <tr> <td>3인~</td> <td>2,500</td> <td>200</td> </tr> </tbody> </table>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좌 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단독 가구</td> <td>1,300</td> <td>70</td> </tr> <tr> <td>홀합이</td> <td>2,100</td> <td>170</td> </tr> <tr> <td>맞합이</td> <td>2,500</td> <td>210</td> </tr> </tbody>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합이	2,100	170	맞합이	2,500	21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소득 기준 (만원)</th> <th>최대 지급액 (만원)</th> </tr> </thead> <tbody> <tr> <td>단독 가구</td> <td>1,300</td> <td>77</td> </tr> <tr> <td>홀합이</td> <td>2,100</td> <td>185</td> </tr> <tr> <td>맞합이</td> <td>2,500</td> <td>230</td> </tr> </tbody> </table>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홀합이	2,100	185	맞합이	2,500	230
부양 자녀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없음	1,300	70																																										
1인	1,700	140																																										
2인	2,100	170																																										
3인~	2,500	20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0																																										
홀합이	2,100	170																																										
맞합이	2,500	210																																										
구성	소득 기준 (만원)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가구	1,300	77																																										
홀합이	2,100	185																																										
맞합이	2,500	230																																										
자녀 장려 세제	-	-	-	'15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 1인당 30~5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좌 동)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전 세금 등 합계 1억원 미만	(좌 동)	(좌 동)	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장려 금의 50%만 수급)	근로장려금 1억 4 천만원 미만(좌동), 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																																							
주택 요건	무주택 (5천 만 원 이하 1주택 포함)	무주택 (6천만원이하 1주 택 포함)	(좌 동)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	(폐 지)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가구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급액도 2012년 등 일부 시점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등 규모 확대
 - 신청가구는 2008년 72.4만가구(5,582억원)에서 2015년 169.5만가구(1조 3,048억원)로 증가
 - 실제로 지급된 가구는 2008년 59.1만가구(4,537억원)에서 2015년 137.9만가구(1조 280억원)으로 증가

[표 5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연도 (귀속기준)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08	723,937	558,161	590,720	453,731	133,217	104,430
2009	676,634	522,352	566,080	436,903	110,554	85,449
2010	666,816	509,405	522,098	402,003	144,718	107,402
2011	930,232	747,481	752,049	614,021	178,183	133,460
2012	1,020,087	719,327	783,397	561,761	236,690	157,566
2013	1,060,405	967,151	846,018	774,492	214,387	192,659
2014	1,658,659	1,419,592	1,281,856	1,056,562	376,803	363,030
2015	1,695,491	1,304,810	1,378,953	1,028,049	316,538	276,761

자료: 국세청,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자녀장려금은 2014년 신청가구 140.3만가구 중 107.5만 가구에 6,579억원, 2015년 신청가구 114.5만가구 중 92.6만가구에 5,607억원을 지급

[표 51]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연도 (귀속기준)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14	1,403,164	975,841	1,074,814	657,898	328,350	317,943
2015	1,144,573	775,108	926,344	560,657	218,229	214,451

자료: 국세청,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중복신청해 모두 지급받은 가구는 2015년 49.5만가구(근로장려금 4,595억원, 자녀장려금 3,519억원) 규모

[표 52]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중복가구(2015년 귀속기준)

(단위: 가구, 백만원)

	신청		지급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근로장려금	1,695,491	1,304,810	1,378,953	1,028,049
자녀장려금	1,144,573	775,108	926,344	560,657
중복신청가구	608,268	(근로) 573,677 (자녀) 451,140	495,572	(근로) 459,467 (자녀) 351,9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 2015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단독가구는 41.8만 가구(1,551억원), 홀벌이 가구는 82.9만 가구(7,413억원), 맞벌이 가구는 13.2만 가구(1,317억원) 수준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홀벌이 가구는 73.3만 가구(4,453억원), 맞벌이 가구는 19.3만 가구(1,153억원) 수준

[표 53]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5년 귀속 기준)

(단위: 가구, 백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단독 가구	417,984	155,144	-	-
홀벌이 가구	828,590	741,254	733,130	445,317
맞벌이 가구	132,379	131,651	193,214	115,34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 2015년 기준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92.5만 가구(6,654억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45.4만 가구(3,627억원) 규모
 -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57.4만 가구(3,392억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5.2만 가구(2,215억원) 규모



[표 54] 소득종류와 총급여 규모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2015년 귀속 기준)
(단위: 가구, 백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근로소득	925,028	665,403	574,282	339,166
~1천3백만원	673,825	466,757	156,528	110,848
~2천1백만원	228,699	191,226	136,671	95,792
~2천5백만원	22,504	7,420	59,574	37,735
~4천만원	-	-	221,509	94,791
사업소득	453,925	362,646	352,062	221,491
~1천3백만원	308,337	248,069	107,483	76,537
~2천1백만원	123,943	107,564	77,758	55,475
~2천5백만원	21,645	7,013	37,442	25,298
~4천만원			129,379	64,18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2) 해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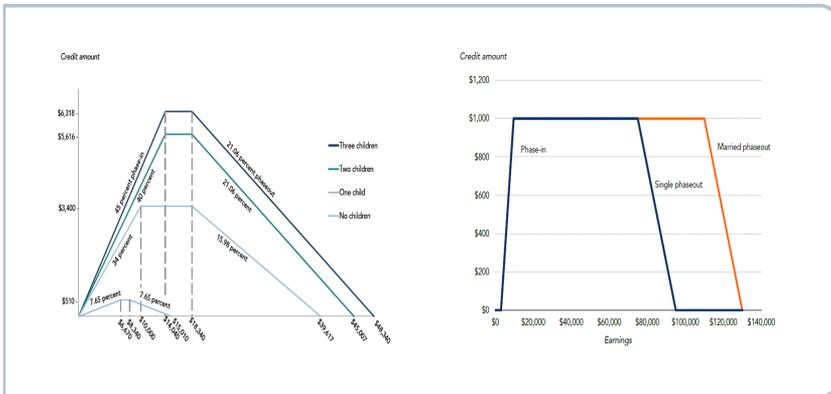
■ 미국은 1975년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997년 Child Tax Credit(CTC)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추세

- 도입 및 제도 변화
 - EITC는 1975년 조세감면법(Tax Reduction Act)로 한시적 도입되었다가 1987년 세입법(Revenue Act)에 의해 소득세법에 포함
 - 1991년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부터 무자녀 가구 포함, 2002년부터 맞벌이 가구에 지급액 확대(marriage penalty relief)를 적용
 - 2009년 경기회복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급여수준 인상, 다자녀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수준 상향하는 한편, CTC 수급 기준 소득액을 \$8,500에서 \$3,000으로 하향조정
- EITC와 CTC는 소득수준, 자녀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과 점증·점감률이 차등 결정
 - EITC의 1자녀 가구 최대 지급액은 2017년 기준 \$3,400, 3자녀 가구는 \$6,138이며, 24~64세에 한해 자녀가 없는 가구는 최대 \$510 수령¹⁹⁾

- CTC는 17세 이하 자녀 한 명 당 최대 \$1,000 지급하고, 5% 점감률 적용²⁰⁾
- 예산 상 음의 수입(negative revenue)으로 분류되나, 세부담을 초과하여 돌려받는 추가 환급액은 지출(outlay)로 분류²¹⁾
- 2014년 기준 EITC 신청규모는 \$683.3억(2,854만명) 수준으로, 이 중 추가 환급액(refundable portion)은 약 86.2%(\$588.9억) 수준
- 2014년 기준 CTC 신청규모는 \$272억(2,239만명) 수준

[그림 20] 미국의 가구당 EITC 지급 구조 (2017년 기준)

[그림 21] 미국의 가구당 CTC(1자녀 가구) 지급 구조(2017년 기준)



자료: Tax Policy Center, "Refundable Credit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Child Tax Credit", 2013,3,23.

■ 영국은 2003년부터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인 Working Tax Credit(WTC)과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Child Tax Credit(CTC)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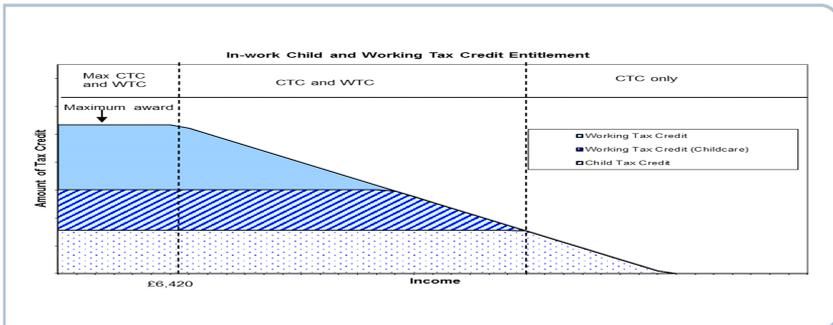
- 수급조건 및 지급액 구조

- 19) 2014년 기준 자녀 수별 (신청가구 수, 신청액) 비율은 무자녀 가구 (25.9%, 3.1%), 1자녀 가구 (36.8%, 36.5%), 2자녀 가구 (25.3%, 39.6%), 3자녀 이상 가구 (12.1%, 20.7%) (IRS,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2016.7.)
- 20) 소득 \$3,000 초과 가구의 경우, 세부담을 초과하여 돌려받는 추가 환급액(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소득의 15%로 제한
- 21) IR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4", 2016.8.



- WTC는 주당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할 경우 2016-17 회계연도 기준 연 £1,960을 지급(60세 이상, 장애, 한부모 가구 최소 근로 16시간)
- WTC 지급액은 연간 기본금액(£1,960), 부모당 £2,010 등을 추가로 지급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보육료(1자녀의 경우 주당 £175 한도) 신청도 가능
- CTC는 1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적용되며, 가구당 연간 기본 지급액 £547에 자녀 1명 당 지급액 £2,780 등을 합산해 금액 산출
- 소득 £6,420(CTC만 수령하는 가구는 £16,105) 초과 시 점감률은 소득 £1당 41%(자녀 1명인 가구의 경우 소득 £24,200을 초과하면 제외)
- WTC와 CTC는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관리 하에서 소득심사 및 지급액이 함께 결정되며, 주 또는 월 단위로 가구에 지급
- 대상가구는 2016년 12월 기준 411만 가구로, 2005년 12월(590만 가구) 대비 70% 수준²²⁾
 - WTC만 수령하는 경우는 44만 가구, CTC만 수령하는 경우는 195만 가구, 모두 수령하는 경우는 173만 가구
- 2015-16 회계연도 기준 지급액은 £285억으로, 그 중 WTC £61억, CTC £224억 수준²³⁾
 - 지급액 중 £258억은 세부담을 초과하여 돌려받는 환급액(payment of entitlement)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24억은 부의 조세(negative taxation)으로 분류

[그림 22] 영국의 가구당 WTC와 CTC 지급 구조(2016년 기준)



자료: HM Revenue & Customs,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UK", 2016.12.

22) HM Revenue & Customs,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UK", 2016.12.

23) HM Revenue & Customs,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5-16", 2016.7.

다.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이 낮고 일부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누진적인 구조
 - 2015년 사업소득 확정신고자 중 소득금액 기준 상위 15.7%에 해당하는 인원은 2만 여명(종합소득 5억원 초과자, 전체 인원의 0.4%)이며,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의 33.7%(7.9조원)를 부담
 - 소득금액 기준 하위 17.6%에 해당하는 인원은 375만명(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자, 전체 인원의 68.3%)이며,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의 2%(4.7천억원)를 부담

[표 5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분포(2015년 귀속)

(단위: 명, 억원, %)

종합소득 규모별	신고 인원	소득		결정 세액		
		누적 비중	금액	누적 비중	누적 비중	
0 이하	188,707	3.4	-	0.0	-	0.0
0~1천만원	2,408,205	47.4	120,609	7.4	861	0.4
1천만원~2천만원	1,148,473	68.3	164,269	17.6	3,820	2.0
2천만원~3.5천만원	710,437	81.3	186,710	29.1	9,373	6.0
3.5천만원~4천만원	127,932	83.6	47,840	32.1	3,250	7.3
4천만원~6천만원	325,538	89.5	159,403	41.9	12,826	12.8
6천만원~8천만원	184,011	92.9	127,058	49.7	13,413	18.5
8천만원~1억원	113,174	95.0	101,032	56.0	12,883	23.9
1억원~2억원	184,961	98.3	250,501	71.4	45,310	43.2
2억원~3억원	43,470	99.1	105,028	77.9	25,682	54.1
3억원~5억원	27,310	99.6	103,331	84.3	28,942	66.3
5억원~10억원	13,879	99.9	93,547	90.1	28,522	78.5
10억원~	6,581	100.0	161,011	100.0	50,783	100.0
합계	5,482,678		1,620,339		235,665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2016.



-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소득금액 기준 상위 15.8%에 해당하는 인원은 60만명(총급여 1억원 초과자, 전체 인원의 3.4%)이며,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52.2%(14조 8천억원)를 부담²⁴⁾
 - 소득금액 기준 하위 14%에 해당하는 인원은 766만명(총급여 2천만원 이하자, 전체 인원의 44.2%)이며,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0.2%(7백억원)를 부담

[표 5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분포(2015년 귀속)

(단위: 명, 억원, %)

총급여 규모별	신고 인원	누적 비중	소득 금액		결정 세액	
			누적 비중	누적 비중		
0~1천만원	3,610,221	20.8	180,617	3.2	1	0.0
1천만원~1.5천만원	2,084,938	32.9	266,886	7.9	29	0.0
1.5천만원~2천만원	1,961,900	44.2	346,238	14.0	658	0.2
2천만원~3천만원	2,930,090	61.1	727,881	26.8	3,640	1.5
3천만원~4천만원	1,928,195	72.2	674,139	38.7	8,260	4.5
4천만원~4.5천만원	737,622	76.5	315,020	44.3	6,472	6.7
4.5천만원~5천만원	622,341	80.0	297,224	49.5	7,835	9.5
5천만원~6천만원	988,334	85.8	545,885	59.2	19,328	16.4
6천만원~8천만원	1,303,229	93.3	905,799	75.2	47,338	33.1
8천만원~1억원	570,400	96.6	509,514	84.2	41,458	47.8
1억원~2억원	531,870	99.6	666,581	95.9	86,093	78.3
2억원~3억원	37,649	99.8	90,167	97.5	20,553	85.5
3억원~5억원	17,112	99.9	64,036	98.6	17,137	91.6
5억원~10억원	6,112	100.0	40,449	99.3	12,188	95.9
10억원~	1,904	100.0	34,385	100.0	11,540	100.0
(결정세액 없는 1억 초과자 ²⁾)	1,477		2,469			
합계	17,333,394		5,667,290		282,528	

주: 국세통계연보 상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 총급여 분류 기준이 달라, 별도로 표시함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2016

24) 국세통계연보 상 분류기준이 달라, 결정세액이 없는 1억원 초과자 1,477명은 제외하고 분석

-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을 1975년 70%에서 2008년 35%까지 인하하였으나, 2012년 이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의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환
 -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세율 적용
 - 2014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표 1억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일부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개편하여 고소득자에게 공제혜택이 큰 현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
 - 2017년부터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 과표 5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상

[표 57]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현황(2015년 소득 기준)

(단위: 명, 조원)

소득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급여총계)		결정세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종합 소득	1억5000만원~5억원	109,673	28,1	108,850	7.0
	5억원 초과	19,571	25,0	19,544	7.8
	전체	5,482,678	162,0	4,696,407	23.6
근로 소득	1억5000만원~5억원	73,480	19,4	73,257	4.6
	5억원 초과	6,680	6,8	6,674	2.2
	전체	17,333,394	566,7	9,229,164	28.3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2016.

-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 인하되었다가, 2010년 이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다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추세
- 최근에는 세수부족 문제와 더불어 소득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소득세를 포함한 조세 및 재정개혁을 통해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 등은 각국의 소득신고서(tax return)를 바탕으로²⁵⁾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 피케티 교수의 분석에 대해 OECD(2014)는 상위 1% 비율 증가의 원인으로

25)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http://www.wid.world/>)



소득세 누진도 약화 및 자본소득세 이원화 등을 진단

- 상대적으로 납세능력이 커진 고소득층에 대해 공제·비과세를 축소하거나 부동산세 및 상속세 등 부유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

- CBO(2012)는 미국 세율인하 시기(1945년~2010년)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해 세율과 상위 소득점유율 간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 IMF(2014)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직접세 및 정부이전(tax and transfer)의 누진도 완화가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
 - 세율인상과 상위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 소득세 누진도 강화와 함께 공제 등 조세지출의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가 소득재분배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반면, 이러한 정책이 근로·저축의욕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세원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음

- 성명재(2014)는 소득세 등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등 세원확보를 통해 더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
 -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더라도, 총량적인 측면에서 세수효과가 크지 못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가계조사자료로부터 지니계수를 도출해,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편이며, 특히 직접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분석
- 금융소득 및 자영업자 소득 등의 파악률을 제고하고 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라. 금융소득 과세 강화

-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보유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구분
 -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세
 - 세율은 0.5%(비상장주식 등)이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 코스닥·코넥스의 경우 0.3% 부과
 - 상장주식에 대해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소액주주는 제외
 - 2016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기업 등과 동일하게 과세²⁶⁾
 -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본세율 20%, 탄력세율 10%에서 5%로 인하(16.2.개정)²⁷⁾, 기본공제 250만원)

[표 58]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대기업주식	중소기업주식	대기업주식
대주주	20%	20%(1년이상 보유)	20%	20%(1년이상 보유)
		30%(1년미만 보유)		30%(1년미만 보유)
소액주주	비과세	비과세	10%	20%

- 소득간 과세의 불공평은 투자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
 - 주식의 자본이득은 토지·건물 등 자본이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 및 근로소득과 같은 타소득과의 형평을 위해 과세될 필요

26)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9



- 금융자산 별로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시장왜곡을 최소화 하고 금융 상품 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
 - 보유와 처분 간, 간접투자자와 직접투자자 간 등 과세의 차이가 존재²⁸⁾
 - (사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한편, 동일한 금융자산일지라도 상장주식 보유 대주주 등 일부를 제외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

- 당초 우리나라 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배경으로, 초기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유인이 크게 우선 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
 - 산업화 초기에 주식시장을 통한 저축동원과 자본축적을 위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홍범교 · 김진수, 2010)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추세²⁹⁾
 -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주식시장 초기부터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일본은 1999년 거래세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
 - 미국(1965년), 독일(1991년), 스웨덴(1991년), 일본(1999년)은 거래세를 폐지
 - 영국은 양도소득세 외 거래세 및 배당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
- 양도세 과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시적인 충격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동결효과(lock-in effect) 및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를 통해 거래량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

28) 문성훈 외,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세제 연구”,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2015.12.

29)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5.10, p.51.

- 동결효과는 과세로 인해 차익 발생 시 매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연기하고 손실 발생 시 손실공제를 위해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한다는 이론
 - 자본화효과는 과세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투자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이론
 -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양도세 시행(1991년) 전년도에 조세회피 현상(차익실현 촉진, 손실실현 연기)이 일어나 주식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음(허성관·홍순복, 1997)
- 실제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장기간 여유를 가지고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 일본의 경우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거래량 위축이 발생했으나, 분리과세 및 장기간의 여유기간을 둠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³⁰⁾
 - 대만은 주식 양도차익과세 시행 1년 만에 주가 시장폭락³¹⁾으로 제도시행을 보류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과세로 전환

30) 일본은 1988년 이후부터 5개월간 여유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들이 이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고, 과세방식도 분리과세방식을 채택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그 충격을 최소화함

31) 대만의 경우 갑작스러운 과세 시행과 초기부터 높은 세율인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양도차익 과세 도입 발표직전인 1988년 9월 28일 8,790p에서 두 달 뒤인 1988년 10월 21일 5,615p로 주가는 36% 이상 하락함



(2) 대주주 및 상장주식 소액주주 범위의 확대

- **현행 소득세법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대주주의 요건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 보유한 자,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이상 보유한 자로 변경³²⁾
 - 향후 2차레(18.4, 20.4) 시가총액 기준 완화해 대주주 범위를 넓힐 예정
 - 비상장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범위를 지분 4%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추후 범위를 넓힐 예정³³⁾

[표 59] 주식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변화(지분율, 시가총액)

시행	1999.1.	2000.1.	2005.8.	2013.7.	2016.4.	2017.1.	2018.4.	2020.4.
코스피	5%	3% 100억원	(동일)	2% 50억원	1% 25억원	(동일)	1% 15억원	1% 10억원
코스닥			5% 50억원	4% 40억원	2% 20억원	(동일)	2% 15억원	2% 10억원
코넥스				4% 10억원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비상장 주식					(코스피 동일)	4% 25억원	4% 15억원	4% 10억원

-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규모의 증가,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점차적으로 소액주주에게 과세할 필요가 있음(홍범교 · 김진수, 2010)³⁴⁾**
 -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1990년 GDP의 41.3%에서 2012년 100.9%까지 증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 신설

34)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0

가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성숙됨

-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칙을 구현하고 소득 간 과세 불공평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1,448조원으로 2014년 기준 GDP 대비 92% 수준이나, 주식투자인원이 약 5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14년 기준 3,793건으로 소수에 불과³⁵⁾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벨기에의 경우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일본·우리나라와 같이 소액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표 60] 주요국의 상장주식 관련 소액주주 과세현황

	양도소득세	거래세	배당소득세
미국	단기투자: 10 ~ 39.6% 장기투자: 0, 15, 20%	없음	0, 15, 20%
영국	18, 28%	0.5%	10, 32.5, 37.5%
일본	20% (소액의 상장주식 투자 비과세)	없음 ('89.3 0.55% → '99.4 폐지)	20%
독일	25%	없음 ¹⁾	25%
벨기에	없음 (투기목적시 33%세율 적용)	0.25% ¹⁾	25%
대만	2013년 도입	0.6% (매입·매도시 각각 0.3%)	20%
우리나라	없음 (일부 대주주만 적용)	0.3%	14%

주: 1)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EU 11개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서만 2016년 부터 금융거래세(주식 0.1%, 파생금융상품 0.01%, 채권 0.1%)를 시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5.10, p.51.

35)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p.52.



(3) 파생상품 자본이득 과세

-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은 초기 시장성장을 위해 비과세³⁶⁾해왔으나,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6년 소득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
 - 미국 · 일본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모두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형태로 과세하여 왔으며, 대만에 이어 이탈리아가 최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금융기관에 한징)를 부과하기 시작
- 1996년 KOSPI200선물 개설, 1997년 KOSPI200옵션 개설 이후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은 주가지수상품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2013년 현재 세계 파생거래량 9위)
 -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2013년을 기준으로 장내파생, 장외파생 모두 1.2경원 수준이었으며, 장외파생거래는 최근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비해 장내파생거래는 2011년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장내파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OSPI200파생상품은 2011년까지 꾸준히 성장해오다가 최근 주식시장 거래감소, 파생상품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거래가 감소('11년 1경 1,696조원 → '13년 6,684조원)
-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2016년 소득분부터 기본세율 20%(탄력세율 5%, 기본공제 250만원)의 내용으로 과세
 - 다만 이월공제(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당해연도 손익과 상계)는 허용하지 않고, 당해연도 손익(손실공제 가능)에 대해서만 과세
 -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범위는 주가지수파생상품 및 해외시장에 상장된 장내 파생상품으로 한정됨
 - 과세대상인 코스피200 선물 · 옵션과 더불어 2017년 4월부터 코스피200 ELW(주식워런트증권)도 과세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

36) 다만 법인의 파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10~22%)로 과세되며,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0.5%)가 부과되고 있음

마.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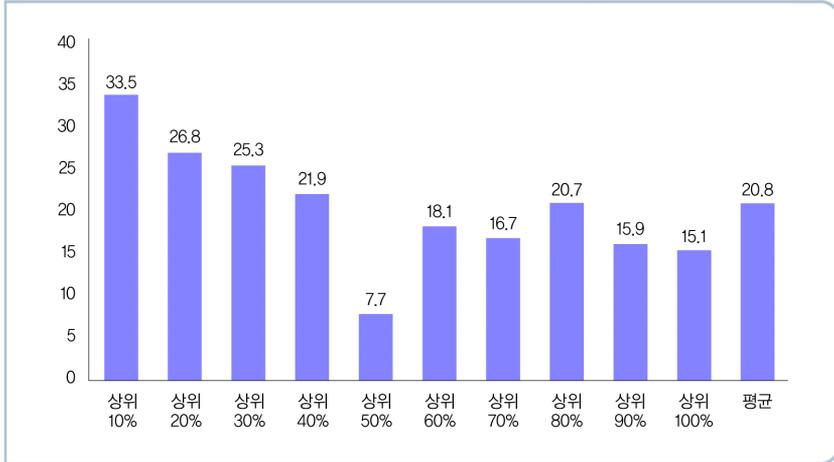
- 최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은 비교적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과표 양성화 노력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처가 강화되는 정책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
 - 종합소득세 부담구조는 1997년 이후 과세미달자가 63.5%에서 2011년 41.5%로 감소하였고 과세표준 8천만원(8.8천만원) 초과자의 비중이 1997년 1.2%에서 2011년 3.1%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세부담자 중 고소득자 비중이 증가
 - 종합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이 감소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득파악 노력과 함께 변호사, 의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음(임성균, 2007)
-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실제 소득 대비 적출 소득 비율)이 2012년 39.4%³⁷⁾로 여전히 높은 수준
- 신영임·강민지(2014)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소득함수 추정법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규모를 2012년 기준 21%로 추정
 - 2012년 소득 탈루율: 상위 10%계층 33.5%, 하위 10%계층 15.1%
 -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 탈세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집중이 더 필요

37)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조사결과는, 세금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23]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결과

(단위: %)



자료: 신영임·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최근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과 더불어, 행정부에서는 FIU 정보 등을 활용하여 탈루혐의가 큰 업종의 차명계좌 이용 소득은닉, 비용 과대계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검증 강화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
- 그 밖에 고소득자의 소득탈루 문제를 개선하고 성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 정책으로 특별공제를 자영업자에게 허용하자는 주장(김유찬, 2012)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여 과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안종석 외, 2010)이 있음
 -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공제 혜택의 유인정책을 설계하기 이전에 세원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 _____,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2011.
- _____, 『201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2.
- _____, 『비과세 · 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2013.
- _____,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3.
- _____,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4.
- _____,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5.
- 기획재정부, 『감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008.
- _____, 『조세개요』, 각 연도
- _____,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4. 5.
-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4.
- 김우철, “소득세 비과세 · 감면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3년 경제학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2013.
- 김유찬, “2012년 4월 11일 총선 이후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월간조세 2012년 5월호, 2012.
- 김재연의원실, “비과세 감면 제로베이스 재설계, 상임위 정책 보고서 2013-제3호, 2013.
- 박명호,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성명재 · 김승래, 『시장왜곡 축소 등을 위한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 조세연구원, 2006.
- _____,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 · 재정정책 효과 분석』, 한국 조세연구원, 2011.
- 성명재,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 및 조세부담 · 재정지출 수혜 분포”,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9.
- 신영임 · 이영환,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신영임 · 강민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안종범, 『개방화 · 세계화 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안종석 외,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 조세연구원, 2010.
- _____. 전병목,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이영 외, 『Rosen의 재정학』, 교보문고, 2007
- _____, 『개인소득세 세율 및 감면 구조 선진화 연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정책연구보고서, 2012.
- 이영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
- 임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2012.
- 임성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소고”, 계간 세무사 2007년 가을호, 2007.
- 임주영 외, 『소득세 적정 과표구간 설정』,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2012.
- 주OECD대표부, “OECD 국가의 조세정책과 행정”, 2010.
- 전병목,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9.
- _____, 『소득세 세율체계 및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2008
- _____, “소득세제 개선방안”,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2008.
- 전완희 외, 『근로장려세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제12호, 2011.
- 정운오 · 전병욱,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및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계연구, 2010.
- 최명근, 『세무학강의』, 영화조세통람, 2007.
- 현진권, “소득세제의 단일세율”, 국제월보, 2005.
- 홍범교 · 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0.

- CBO, Taxes and the Economy: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op Tax Rates Since 1945, Thomas L. Hungerford, 2012.9.
- EU, Tax reforms in EU Member States, 2012 Taxation Papers, 2012.
- IMF, Personal Income Tax Reform: Concepts, Issues, and Comparative Country Developments, 2005.
- _____, 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2014.
- KPMG, “KPMG’s Individu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Rate Survey 2012”, 2012.
- OECD,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2006.
- _____,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_____, Tax Database
- _____, Taxing Wages 2011, 2012, 2013.
- _____, “What are the Best Policy Instruments for Fiscal Consolidation”, Economics Department Policy Note No. 12, 2012.
- _____, “FOCUS on Top Incomes and Taxation in OECD Countries: Was the crisis a game changer?”, 2014.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② 소득세

발간일	2017년 6월 1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원양산업(주) (tel 02 · 2263 · 926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8)

ISBN 978-89-6073-994-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